

#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조재현

지역법제 연구 15-16-①-7

#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조 재 현



#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Singapore**

**연구자 : 조재현(동아대학교 법전원 교수)  
Cho, Jae-Hyun**

**2015. 9. 30.**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싱가포르는 부패의 정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싱가포르의 국가청렴지수는 아시아에서 1위, 전체에서는 10위권 안을 유지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부패에 대한 예방적 교육활동, 효율적인 조직문화와 시스템 운용,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과 부패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부패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부패예방과 효율적 조직문화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 및 민간부문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착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II. 주요 내용

-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제는 부패방지법, 부정축재몰수법, 형법 등이 있으며, 부정축재몰수법은 1999년 부패, 마약 및 중대 범죄로 인한 이익(편익)몰수법으로 대체되었음

- 그 밖에 장관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공무원의 행위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함
    - 식민지시대에는 영국해협식민지 형법에 의하여 부패가 불법으로 간주되었으며, 1937년에 부패방지규정이 제정되었음
    - 부패방지규정은 비교적 짧은 규정이었지만, 부패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었으며, 뇌물공여의 경우는 호의 또는 비호의(대가)를 보일 것이 요구되었음
    - 1952년 부패행위조사국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경찰청 산하의 반부패브런치라는 작은 부서에 부패행위를 전담하였음
-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의 금지, 부패행위방지기구로서 부패행위조사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에서는 뇌물(bribe), 향응(corrupt gratification) 등의 제공, 수수, 약속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향응(Gratifications)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함
    - 싱가포르에서는 뇌물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부패방지법 제5조에 의하여 범죄가 됨
    - 부패방지법은 일반인 간의 뇌물수수행위도 처벌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법외 적용되며, 외국에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음
    - 고용에 관하여 증뢰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추정규정을 두고 있음

- 의원에 대한 중뢰금지규정은 의원의 자격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또는 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유인 혹은 보수로 의원에게 향응을 청약, 요구,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조사 및 압수수색 절차 등에서 부패행위조사국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사와 관련하여 법적인 정보 제공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제공이 금지되는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금지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은 허위의 정보나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부패방지법 부패행위를 교사한 자, 부패행위를 시도한 자, 부패 행위를 공모한 자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전(Penal Code)이며, 형법전 및 기타 특별형법에 정하는 모든 범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소추, 재판이 되고 있음
- 형법상 부패관련 규정을 보면 형법 제161조에서 165조까지 공무원의 수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싱가포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며, 그 밖에 부패행위조사국, 중앙마약국, 이민 및 검문기관 등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에 한하여 수사할 수 있음

- 부패, 마약 및 중대범죄로 인한 이익(편익)몰수법 제65장(A)는 부패행위자가 행한 범죄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자가 취득한 이익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법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재산적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장관의 처신 및 개인 신변 정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는 장관 대상 행동강령을 195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장관행동강령의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의 공개, 법인 이사 및 사업 파트너쉽 등의 유급업무 중단, 재정적 이해관계의 회피, 공무원들과의 관계, 언론관여 금지, 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은 7가지의 해야 될 일과 24가지의 해서는 안될 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독립된 부패방지기구로 부패행위조사국을 설치하고 있음
    - 부패행위조사국 설립 전에는 싱가포르 경찰의 특별 분과인 반부패 브런치에서 부패행위를 통제하였으나, 1952년에 완전히 별개의 구별되는 독립된 기관으로 부패행위조사국을 설치하였음
    - 부패행위조사국은 1952년에 설립되어, 부패행위조사국이 위치하고 있었던 장소에 따라 대법원시설, 스탬포드 가 시절, 힐 중심가 시절, 캠تون먼트 가 시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부패방지국장(Director of the CPIB)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며, 총리실의 사무차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짐

- 대통령은 부패행위조사국의 부국장과 다수의 부국장보 및 특별 조사관을 임명함
  - 부패행위조사국은 운영부, 법인사무부, 조사부 등 세 개의 주요국으로 구분됨
  -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조사권, 압수수색권한, 체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부패행위조사국은 기소권한은 갖지 않으며, 사건을 검찰청에 송부 해야 함
  - 부패행위조사국은 검찰청, 법원과 함께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타 국가기관이나 그 밖에 조직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부패행위조사국 외에 싱가포르에서 반부패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다른 조직으로는 공공서비스위원회, 싱가포르 재무부 예산국, 싱가포르 공무원 대학, 싱가포르 검찰조직 등이 있음
- 싱가포르는 부패에 대한 엄정한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신상 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부패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가 부과됨
    -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만불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들의 병과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 부패행위가 계약이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패행위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 부패행위 위반을 한 공무원이 형사적 제재를 받을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부과되지만, 법원에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부서별 징계규정에 의하여 행정적 제재가 부과 될 수 있음
  - 부서별 징계규정은 해임, 강등, 봉급인상의 정지, 과료 또는 견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공무원의 부패나 비리를 줄이기 위하여 파견경찰공무원을 상임의 민간 조사관으로 대체, 부패행위를 조장하는 기회의 제거, 행정절차의 간소화, 요식행위의 삽감, 공무원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할 봉급의 검토 등과 같은 행정적 조치가 취해짐
- 그 밖에 행정적 대책으로 직무의 분리, 직원의 순환근무, 내·외부의 회계감사 및 감시 등의 대책이 있음
- 모든 장관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항상 성실성, 책임감, 정직성, 청렴성, 근면성에 대한 최상의 기준에 따라 행동장관행동 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장관행동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음
- 헌법 기능적 방지수단으로 헌법규정은 기본적인 목표와 국가 정책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정치와 행정, 관료와 정치 등의 융합현상 등이 나타남

- 싱가포르의 예방적 부패방지수단으로는 업무수행 방식의 검토, 공직자의 부채 없음의 선언, 자산 및 투자 등의 선언, 선물수수의 금지,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의 의지와 반부패 환경의 조성, 집중적 부패방지특별기구의 활동, 예방강연,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 등이 있음

### III. 기대효과

- 싱가포르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영역에서의 부패의 원인과 현상 및 대책에 관한 본 연구는 부패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학술적 · 정책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짐
- 싱가포르의 강력한 부패예방수단은 우리의 부패예방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의 부패행위 조사과정의 효율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강력하고 엄정한 부패에 대한 제재수단뿐만 아니라 부패에 대한 예방적 교육 및 훈련,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인식 등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주제어 : 부패, 부패방지법, 부폐행위조사국, 국가청렴지수, 행동강령

---

**Abstract**

---

## I . Object of Research

- Singapore has been ranked as one of the world's least corrupt countries
  - Singapore is 7<sup>th</sup> of 175 countries i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s(TI)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2014
- Singapore has managed to control corruption
  - Singapore has an effective anti-corruption law and independent anti-corruption agency
  - Singapore has a strong punishment for corruption
  - Singapore carry out preventive discipline and education
  -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stand is clear and firm
  - Corruption is well under control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Singapore
- This research has many implications to our preventive policy for corruption in Korea

## **II. Main Contents**

- Singapore has a legislative system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 Singapore has Prevention of Corruption Act(PCA),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and Penal Code as a law of prevention for corruption
  - Singapore has Code of Conduct for Ministers and Do's and Don'ts for Public Officers
- PCA provide for more effectual prevention of corruption
  - PCA was enacted in 1960
  - It is provided powers of Arrest under Section 15 of the PCA
  - It is provided powers of Investigation under Section 17 of the PCA
  - It is provided powers of Search and Seizure under Section 22 of the PCA
  - PCA empowers CPIB officers to investigate and arrest corrupt offenders
- PCA has definition of corruption
  - An act done with an intent to give advantage inconsistent with official duty and the rights of others

- The act of official or fiduciary person who unlawfully and wrongfully use his status or character to procure some benefit for himself or for another person contrary to duty and the right of others
  - Corruption involves the dishonest or preferential use of power or position which has the result of one person or organization being advantaged over another
- There are several corruption offences under the PCA
- Corruptly solicit, receive, or agree to receive any gratification for himself, or for any other person
  - Corruptly give, promise, or offer to any person any gratification, whether for the benefit of that person or of another person
    - Gratifications include money or any gift, loan, fee, reward, commission, valuable security or other property or interest in property of any description, whether movable or immovable
    - Gratifications include any office, employment or contract
    - Gratifications include any payment, release, discharge or liquidation of any loan, obligation or other liability whatsoever, whether in whole or in part
  - To offer any gratification to a Member of Parliament
  - To offer any gratification to any member of a public body
- PCA covers both the civil servants as well as those working in the private sector

-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allows the court to confiscate properties from convicted corrupt offenders
- Code of Conduct for Ministers has been in force since 1954 detailing how Ministers should act and arrange their personal affairs
- There are Do's and Don'ts for public officers
  - There are seven type of obligatory action a list of "Dos" for public officers
  - There are twenty-four type of prohibited act a list of "Don'ts" for public officers
-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is the anti-corruption agency in Singapore
  - CPIB was established in 1952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 CPIB is under the charge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 Director of the CPIB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Singapore
  - CPIB is divided into three main Departments, the Operations Department, the Corporate Affairs Department,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 Investigation Department executes the main function of the Bureau investigating offences unde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CPIB investigates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 CPIB also investigates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 CPIB officers may exercise the powers of arrest, investigations, search and seizure
  - CPIB do not have a power of prosecution, a prosecution under PCA shall not be instituted except by or with the consent of the Public Prosecutor
- There are criminal penalties, administrative action,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rrupt public officers
- Any person who is convicted of corruption offence can be fined or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to both provided under the PCA
- Public officer may be departmental disciplinary procedures if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for court prosecution
- Departmental disciplinary action may include dismissal from service, reduction in rank, stoppage or deferment of salary increment, fine or reprimand, retirement in public interest
- CPIB conducts educational programme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corruption

### **III. Effect of Research**

- This research concerning the cause and measure of corruption in Singapore has academic and social value
- A strong anti-corruption measure of Singapore has good implication for the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 Various preventive measures to reduce opportunities for corruption in Singapore have good implication for the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Key Words : Corruption, CPI, PCA, CPIB, Code of Conduct

# 목 차

|                                |    |
|--------------------------------|----|
| 요약문 .....                      | 3  |
| Abstract .....                 | 11 |
| 제 1 장 서 론 .....                | 21 |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21 |
| I. 연구의 필요성 .....               | 21 |
| II. 연구의 목적 : 싱가포르 연구의 목적 ..... | 22 |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23 |
| 제 2 장 싱가포르의 부패관련 법제 .....      | 25 |
| 제 1 절 부패의 의미 .....             | 25 |
| I. 싱가포르의 법치주의와 부패 .....        | 25 |
| II. 싱가포르의 부패에 대한 인식 .....      | 28 |
| 제 2 절 부패관련 법제 .....            | 30 |
| I.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제 .....           | 30 |
| II. 부패방지법 .....                | 30 |
| III. 형법과 형벌 .....              | 42 |
| IV. 부패이익몰수법 .....              | 46 |
| V. 장관행동강령 .....                | 47 |
| VI. 공무원 행동강령 .....             | 49 |
| VII. 반부패 국제조약 등에 가입 .....      | 51 |

|                                   |    |
|-----------------------------------|----|
| 제 3 절 부패방지 조직체계 .....             | 52 |
| I. 부패행위 통제유형 .....                | 52 |
| II.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           | 53 |
| III. 그 밖에 부패행위방지 기구 .....         | 69 |
| <br>제 3 장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및 대책 .....  | 73 |
| 제 1 절 부패에 대한 제재 .....             | 73 |
| I. 부패에 대한 형사적 제재 .....            | 73 |
| II. 행정적 제재 및 기타 제재 .....          | 75 |
| <br>제 2 절 부패방지대책 .....            | 76 |
| I. 헌법 기능적 방지수단 .....              | 76 |
| II. 그 밖에 예방적 부패방지수단 .....         | 77 |
| III. 공익정보 제공자의 신분보호 .....         | 80 |
| <br>제 4 장 결 론 .....               | 83 |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 83 |
| I.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 .....             | 83 |
| II. 법체계 및 주요 법령 .....             | 83 |
| III. 공직자의 범위와 금지행위 .....          | 84 |
| IV. 신고자 보호 규정 .....               | 85 |
| V. 부패에 대한 제재 .....                | 85 |
| VI. 부패방지기구 및 권한 .....             | 86 |
| <br>제 2 절 시사점 .....               | 87 |
| I. 본 연구의 학술적 · 정책적 가치 .....       | 87 |
| II. 싱가포르 부패예방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 | 87 |

참 고 문 헌 ..... 89

<부 록>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 9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 연구의 필요성

부패는 심각한 사회현상의 왜곡을 가져온다. 그 중에서도 공직사회의 부패는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을 해치며,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부패는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국민의 권리이 보장되기 어려운 사회구조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부패현상이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청렴한 사회구조를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은 경주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청렴한 사회구조 시스템을 위한 첫 단추는 공직사회의 부패현상을 최소화에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직부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라 원인을 달리하기도 한다. 공직부패의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들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현상을 일소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 된 연구를 지향한다. 개별 국가들이 가지는 부패의 특징과 이에 따른 부패예방을 위한 법령의 제정, 부패방지기구의 운용 및 그 성과 등을 토대로 우리의 부패예방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직부패의 특징은 각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현상에 따라 부패의 원인과 현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며, 부패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리한다. 따라서 일반적 부패현상이나 부패방지정책에서 나아가 개별 국가별 공직사회의 부패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정부와 공직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제, 부패방지기구,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I. 연구의 목적 : 싱가포르 연구의 목적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싱가포르의 국가청렴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10위권 안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국가청렴지수는 175개국 중 7위(84점/100점)<sup>1)</sup>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부패의 정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sup>2)</sup> 이처럼 싱가포르의 청렴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부패의 정도가 낮은 국가로 인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국가의 부패방지 시스템에 기인한다. 싱가포르는 부패에 대한 예방적 교육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며, 부패통제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문화와 시스템의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과 부패에 대한 엄정한 제재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공직부패의 연구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부패 예방과 효율적 조직문화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 및 민간부문의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착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효율적 방안모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

1) <http://www.transparency.org/cpi2014/results>.

2) <http://www.cpiib.gov.sg>.

싱가포르 국가청렴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순위표(Ranking for Singapore)

| Year | Rank | No of countries |
|------|------|-----------------|
| 2014 | 7위   | 175             |
| 2013 | 5위   | 177             |
| 2012 | 5위   | 176             |
| 2011 | 5위   | 183             |
| 2010 | 1위   | 178             |
| 2009 | 3위   | 180             |
| 2008 | 4위   | 180             |
| 2007 | 4위   | 180             |
| 2006 | 5위   | 163             |
| 2005 | 5위   | 159             |

[출처] <http://www.cpiib.gov.sg/>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싱가포르에서의 부패의 개념, 부패의 원인과 현상, 부패관련법제, 부페방지기구, 부페의 대책과 예방에 관하여 분석한다. 싱가포르는 부페방지와 관련하여 공직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공직부페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 한다.

제2장에서는 싱가포르의 부페의 개념 및 부페의 원인과 현상에 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부페방지법을 비롯한 부페관련법제 등을 검토하고, 부페방지기구인 부페방지조사국의 조직, 구성 및 권한 등에

## 제 1 장 서 론

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부패방지법제와 우리나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의 부패방지법제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분석의 방법에 의한다. 구체적 연구수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부패방지법제와 부패방지기구의 권한과 비교하여 싱가포르만이 가지고 있는 부패방지법제, 부패방지기구, 그리고 싱가포르 부패방지대책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교법적 연구 분석의 방법도 병행한다.

## 제 2 장 싱가포르의 부패관련 법제

### 제 1 절 부패의 의미

#### I. 싱가포르의 법치주의와 부패

##### 1. 싱가포르의 헌법적 역사

싱가포르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다. 일본의 점령 이후 탈식민지화의 경향에 맞추어 1950년대에 연방내의 자치정부로서 발전하였다가 1963년에 완전한 자치정부가 되었다.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과 리콴유에 의한 싱가포르는 19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국가가 되었다.<sup>3)</sup>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국가이다. 주요(main) 섬이 동서로 26마일, 남북으로 14마일로 대략 시카고와 비슷한 크기이다.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 하나 없이 미국의 11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sup>4)</sup> 범죄, 가난, 쓰레기, 낙서, 실업 등이 없는 유토피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비판을 겪고 있다.<sup>5)</sup>

싱가포르는 독립의 시기에 영국의 법적 토대가 경제적·재정적 투자의 장려하기 위하여 각인된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증적으로 보유되었다.<sup>6)</sup> 지금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현대적이며, 가장 번영한 국가로 인식된다.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개발주의의 형태로 번영을 이루기 전까지는 싱가포르에 있어서 민주

---

3) Mark Tushnet, Authoritarian constitutionalism, Cornell Law Review January, 2015, p. 398.

4) Rafael X. Zahralddin-Aravena, Chile and Singapore: The individual and the collective, a comparison,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Spring 1998, p. 767.

5) Rafael X. Zahralddin-Aravena(fn 4), p. 768.

6) Li-ann Thio, Lex rex or rex lex? Competing conceptions of the rule of law in Singapore, UCLA Pacific Basin Law Journal Fall 2002, p. 12.

주의는 획득할 수 없는 사치라는 요청과 함께 아시아의 가치(Asian Values)가 호소되었다.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권위주의 지배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합리화를 창출하여, 자유주의는 제도화된 분열과 갈등으로 특징되며 자유주의는 아시아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설득시켰다.<sup>7)</sup> 이러한 청교도적 윤리관은 개발초기단계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노동량, 절약, 훈련, 팀워크 등에 공헌하였다. 이러한 아시아의 가치담론은 인권과 충돌하는 요소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sup>8)</sup> 반면에 소수자의 보호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한 계획도 명백히 하고 있었으며,<sup>9)</sup>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의 가치와 시민 정치적 자유 및 번영과 균형관계를 유지하였다.<sup>10)</sup> 싱가포르를 통치하는 인민행동당(PAP)은 반부패의 플랫폼의 중앙에 싱가포르의 경제를 위한 확실성과 안전을 제공하였다.<sup>11)</sup>

싱가포르 헌법은 말레이시아헌법과 두 가지 주요한 점에서 명백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말레이시아연방의 공식적 종교로서 이슬람이 헌법속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싱가포르는 세속성의 원리가 확인된다. 둘째, 말레이인 본토인의 지위를 강조함으로써 특별한 말레이의 권리인 인식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평등주의적 경향을 나타낸다. 대신에 집단의 권리가 아닌 개인을 통한 소수의 관심사가 보호된다. 헌법 제152조는 싱가포르에서의 인종적·종교적 소수자의 관심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sup>12)</sup>

7) 김시윤, 발전국가의 탄력성과 지속성: 싱가포르의 사례,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4호, 2010, 1199면.

8) George Baylon Radics, Singapore: A fine city: British colonial criminal sentencing policies and its lasting effects on the Singaporean Corporal State, Santa Clar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4, p. 64.

9) Li-ann Thio(fn 6), p. 12.

10) George Baylon Radics(fn 8), p. 64.

11) Cameron Sim, The Singapore chill: Political defamation and the normalization of a statist rule of law,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March, 2011, p. 319.

12) Li-ann Thio(fn 6), p. 13.

## 2. 법의 지배와 반부패환경

싱가포르의 성공은 통치를 위한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반부패정부의 존재에 대한 그들의 지도자의 신망 때문이다. 정실인사, 족벌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다른 아시아국가들과 달리 부패를 피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주춧돌로서 능력주의를 채용하고, 부패의 귀책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는 근본적인 PAP 구조(stricture)를 채택하였다.<sup>13)</sup>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 초기의 지도자들은 공무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패에 빠져들지 않도록 반부패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중에 하나가 고액급여정책이다. 부패를 방지하고 사적 영역의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장관의 급여를 고액으로 하는 정책은 비판이 있었다. 고액의 급여정책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합리성에 기초하여 흔히 공공서비스는 소박해야 한다는 순박한 사고를 무시한다. 1994년 이후 장관의 급여는 사적 영역에서의 봉급의 최고수준으로 안정되게 정착해왔다. 불안하고, 이러한 문제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한 정부에서 즐겨 사용되는 유치한 논의는 거절되었으며, 이 정책은 시행되었다.<sup>14)</sup>

깨끗한 정치를 위한 능률적인 정부의 구상은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되었다.<sup>15)</sup> 인민행동당 정부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생존의 정치(the politics of survival)을 펴왔다. “지금부터 싱가포르의 최대과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에 있다. 이것이 싱가포르인들이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생존이며,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라는 리콴유의 주장에서도 잘 나타난다.<sup>16)</sup> 싱가포르의 깨끗하고

13) Li-ann Thio(fn 6), p. 26.

14) Li-ann Thio(fn 6), p. 27.

15) 전제국, 싱가포르의 국가생존전략과 깨끗한 정치,『아세아연구』 제38권 제1호, 1995, 58면.

16) Lee Kuan Yu, Extrapolating from the Singapore Experiences, (Singapore: Ministry of

능률적인 정부의 구상은 복과 제도의 정비, 행정개혁, 정치적 쇄신 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sup>17)</sup>

## II. 싱가포르의 부패에 대한 인식

### 1. 부패의 일반적 정의

부패에 의해 손해는 많은 문헌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심각하다. 경제적 의사결정을 파괴하며, 국가 상호간의 상업적 거래를 방해하며, 직업공무원시스템을 해체시켜버린다. 사회적 구조를 심각하게 부식시킨다.<sup>18)</sup> 그것은 낮은 수준의 투자와 성장과 연결되어 자본의 유입을 막고, 의료와 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분야를 위한 지출의 감소를 가져올 있으며, 정치인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사회공공 기반시설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게다가 공공의 안전, 건강, 환경 보호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부의 규제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sup>19)</sup> 그렇기 때문에 부패는 부패를 양산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제적 투자를 저해한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의 남용(the ab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으로 이해한다.<sup>20)</sup>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임 또는 부여된 권한의 남용으로 정의한다.<sup>21)</sup> 국제투명성기구의 정의는 세계은행의 정의에

---

Culture), 1978, p. 56, 전제국(주 15), 57면에서 재인용.

17) 전제국(주 15), 58면.

18) Philip M. Nichols/George J. Siedel/Matthew Kasdin, Corruption as a pan-cultural phenomenon: An empirical study in countries at opposite ends of the former Soviet Empire,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Winter 2004, p. 217.

19) Claes Sandgren, Combating corruption: The misunderstood role of law, International Lawyer Fall, 2005, p. 718.

20) The World Bank, helping countries combat corruption: The role of the World Bank 8-9 (1997), available at, <http://www1.worldbank.org/publicsector/anticorrupt/corruptn/corrptn.pdf>.

21) Jeremy Pope, Ti Source Book 2000: Confronting corruption: The elements of a national

비해 조금 부족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위임된 권한”은 공공기관 등에서의 권한의 남용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부패는 사적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권한의 행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권한의 행사도 포함하기 때문이다.<sup>22)</sup>

## 2. 싱가포르의 부패 인식

싱가포르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반부패기준은 확고하고 명확하다. 누구든지 부패혐의자는 지위, 계급, 신념에 관계없이 법정에 서야 한다는 점에 주저하지 않는다.<sup>23)</sup>

싱가포르에서는 부패를 부패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참거나 하는 사람에게 보상이나 유인책으로서 어떠한 “향응(gratification, 만족)”을 요청, 수령하거나 제공, 약속, 부여, 수령하는데 동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적 의무와 조화되지 않는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행동, 공적 또는 수탁자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와는 상반되는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나 특성을 불법적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의 결과에 부정한 또는 특혜를 주는 권한이나 지위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24)</sup>

싱가포르에서는 공적 영역의 부패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부패를 포함한다. 공공서비스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조사국은

---

integrity system 13(2000), available at, <http://www.transparency.org/content/download/2439/14493/file/sourcebook.pdf.zip>.

22) Osita Nnamani Ogbu, Combating corruption in Nigeria: A critical appraisal of the laws, institutions, and the political will,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Spring, 2008, p. 101.

23) <https://www.cpib.gov.sg/legislation/introduction>.

24) 부패행위조사국 홈페이지 참조(<http://www.cpib.gov.sg/>).

공공부분의 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특별히 법집행공무원이나 업무의 특성상 부패에 민감한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 사적영역의 부패도 항상 불법적인 커미션이나 뇌물 등의 수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한 상관습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조사국은 사적 영역의 부패도 조사한다.<sup>25)</sup>

## 제 2 절 부패관련 법제

### I.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제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제는 부패방지법(PCA,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부정축재몰수법(CCBA, Corruption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형법 등이 있으며, 부정축재몰수법은 1999년 이후 부패 등으로 인한 이익 몰수법(이하 부페이익몰수법이라 한다)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sup>26)</sup>

### II. 부패방지법

#### 1. 부패방지법의 개요

##### (1) 싱가포르의 부腐败방지법의 역사

###### 1) 식민지시대의 반부腐败방지법

부패는 최초로 1871년 영국해협식민지 형법(the Penal Code of the Straits Settlements)에 따라 처음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반부腐败정책과 대책은 1937년 부腐败방지규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Ordinance)이 제정되기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sup>27)</sup>

25) <https://www.cpib.gov.sg/legislation/introduction>.

26) 부腐败, 마약 및 중대범죄로 인한 이익(편익)몰수법(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27) King hea Joseph, “A comparative study of the anti-corruption measures of Hong Kong

1937년 전에는 부패혐의자가 소속한 각각의 정부부서에 의해서 다루어졌다. 부패사례는 다른 불법적 사례와 달리 특징적이지 않았다. 비록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일반적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수집될 수 없었다. 식민 상황 하에서 관료적 부패행위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으며, 부패는 암묵적 방법으로 다루어졌고, 공공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였다.<sup>28)</sup> 영국 식민지배는 자유방임주의적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안보와 질서유지, 항만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육성에 국한되었고, 그 당시 정부의 역할에 비추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질서유지와 치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찰에 의하여 주로 부정과 비리가 이루어졌다.<sup>29)</sup>

그러나 부패행위가 확대되면서 1937년 규정에 있는 부패관련 대응책에서 나아가 보다 효과적이고 새로운 대책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었으며, 1942년 이후부터는 부정부패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sup>30)</sup>

## 2) 1937년 부패방지규정

싱가포르의 1937년의 부패방지규정은 비교적 짧고 간단한 규정이었지만, 싱가포르의 반부패정책에 관한 입법적 발전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단계이다. 비록 간단하고 짧은 규정이지만 부패의 정의는 명백하였다. 문서위조를 포함한 부패의 정의는 상사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미래의 입법적 통제를 위한 기초가 되었다.<sup>31)</sup>

---

and Singapore since 1945”, Th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HKU Scholars Hub), <http://hdl.handle.net/10722/25883>, p. 33 참조.

28) King hea Joseph, p. 37.

29) 전제국(주 15), 59면.

30) 전제국(주 15), 59면.

31) King hea Joseph(fn 27), p. 38 참조.

부패방지규정에서의 주요 특징은 부패행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부패행위가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한 후 수수행위에 대하여 호의와 비호의, 일종의 대가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오인시킬 의도로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의 문서를 위조한 행위도 부패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사례에도 10,000불의 벌금이나 2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되었다.<sup>32)</sup>

그러나 법무장관은 곧 규정의 단점을 발견하였다. 주요 단점은 수색, 조사, 체포에 대한 경찰권한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단기구금형이었으며, 1946년 이후 경찰권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몇몇 조항이 개정되었다.<sup>33)</sup>

### 3) 1960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

2차 대전 기간 중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사정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공무원들이 봉급만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관료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가 현격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부정부패가 일상화 되었다. 공직자의 낮은 보수와 생활비 급증 그리고 감찰행정의 부재 등으로 싱가포르는 암시장의 행정부(Black Market Administration)로 불릴 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sup>34)</sup>

1952년의 부패행위조사국 설치 이전에는 부패사건은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반부패 브런치(Anti Corruption Branch)로 알려진 작은 부서(unit)에서 조사되었다. 반부패 브런치는 17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경찰조직으로 공직사회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sup>35)</sup> 부패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32) King hea Joseph(fin 27), p. 38 참조.

33) King hea Joseph(fin 27), p. 38.

34) 전제국(주 15), 60면.

35) 유문무, 아시아 국가 반부패정책 비교 - 한국의 반부패전략 개선을 중심으로-, 『아시아 연구』 제11권 제3호, 2009, 192면.

반부패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공공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일반국민들은 보복의 두려움과 반부패 브런치의 효과적인 대응에 의문이 있었으므로 협조하지 않았다.<sup>36)</sup> 모든 부패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독립한 조직부서의 설립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52년 반부패 브런치는 폐지되었고, 부파행위조사국 설치되었다.

#### 4)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의 제정

1954년 인민행동당 창당 당시 인민을 위한 깨끗하고 통일된 행동을 하는 정당이라는 모토로 부정부패척결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1959년 자치정부의 출범으로 부파행위는 줄어들기 시작하였다.<sup>37)</sup> 1960년대 초반에 싱가포르는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부패방지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부패를 뿐만 아니라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부腐败자를 위하여 부腐败방지법이 1960년 6월에 제정되었다. 부腐败방지법의 제정은 새로이 선출된 인민행동당에 의하여 가속도가 붙었다.<sup>38)</sup> 부腐败방지법은 몇 차례 개정되었으며, 개정을 거치는 동안 부腐败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부腐败방지법은 부파행위조사국 공무원에게 부腐败위반자에 대한 조사권과 체포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부腐败방지법의 개정으로 부腐败위반자에 대한 벌칙의 강화와 부파행위조사국 공무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권이 부여되었다.

#### (2) 1960년 부腐败방지법의 제정

##### 1) 부腐败방지법의 제정과 개정

1960년 2월 13일에 통과된 부腐败방지법은 단지 12개의 섹션을 가지고 있었던 1937년의 규정을 대체하여, 전체 32개의 섹션을 가지게 되었다.<sup>39)</sup>

---

36) 유문무(주 35), 192면.

37) 전제국(주 15), 60-62면 참조.

38) King hea Joseph(fn 27), p. 38.

39) King hea Joseph(fn 27), p. 39.

부패방지법 개정 이후에 몇 가지 개정사항이 있었다.

1963년에 부패행위조사국은 조사절차에 있어서 목격자(증인)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sup>40)</sup>

1966년 개정에서는 부정행위의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뇌물뿐만 아니라 사례금, 향응의 요구, 수수 및 제공 등이 부정행위로 규율되었다. 부정행위의 시도(attempt)와 공모(conspiracy)도 실제 범법 행위와 똑같이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특정 공직자가 실제로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뇌물을 수수할 의도만으로도 위법행위로 간주되었다. 1966년의 또 다른 중요한 개정사항은 싱가포르 시민이 해외에서 저지를 부패위반행위도 싱가포르 내에서 행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싱가포르 영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의 거래행위가 기소가 되지 않는 허점이 보완되었다.<sup>41)</sup>

1972년에는 부폐행위조사국 부국장과 특별조사관의 장이 국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다.<sup>42)</sup>

1981년 개정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익이 몰수되도록 하였다. 부정 행위자는 형벌 이외에도 그가 수령한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반납하도록 하였다. 만약 그가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납하지 못하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도록 하였다.<sup>43)</sup>

## 2) 1960년 부폐방지법 제정의 합의

1960년 부폐방지법을 구성하는 개정안은 싱가포르에서는 유래 없는 입법이다. 부폐행위의 정의는 보다 명확해지고 광범위하게 서술되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부패의 종류로 간주되지 않았던 입찰계약에 까지 확대되었다. 싱가포르가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을 때, 그러한 조항은

40) King hea Joseph(fn 27), p. 42.

41) King hea Joseph(fn 27), p. 43.

42) King hea Joseph(fn 27), p. 43.

43) 전재국(주 15), 61면.

상업적 영역에서 깨끗함을 만드는데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것은 사적 영역에서도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sup>44)</sup> 보다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정부가 부패에 대응하여 맞설 싸우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조직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점이다.<sup>45)</sup>

## 2. 부패방지법의 내용

### (1) 개념

1960년의 부패방지법은 부패사례에서 있어서 결정적인 일련의 용어인 기관(Agent), 향응(Gratification), 기관장(Principal), 공공단체(Public body)를 정의하고 있다.

기관(Agent)은 신탁관리자, 행정관리, 집행관 그리고 정부, 기업이나 법인 또는 공공단체, 수탁기관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수탁 기관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sup>46)</sup>

향응(Gratification)은 보다 명백하게 정의된다. Gratification은 1937년 부패방지규정 제2조에서 다소 느슨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가(consideration)을 대신하여 규정되었다.<sup>47)</sup> 부패방지법에서 뇌물(bribe), 향응(gratification)으로 정하고 있으며, 향응(Gratifications)에는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향응(Gratification)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용어로, 수령인에게 호의적인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으로는 (a) 금전 기타 뇌물, 대부, 사례, 보수, 커미션, 가치 있는 안전보장(유가증권), 그 외 동산 및 부동산을 둘지 않고 재산 혹은 재산적 가치, (b) 직장, 고용 혹은 계약, (c) 무언가의 지불, 채무면제, 채무부담, (d) 기타 종류의 여하를

44) King hea Joseph(fn 27), p. 41.

45) King hea Joseph(fn 27),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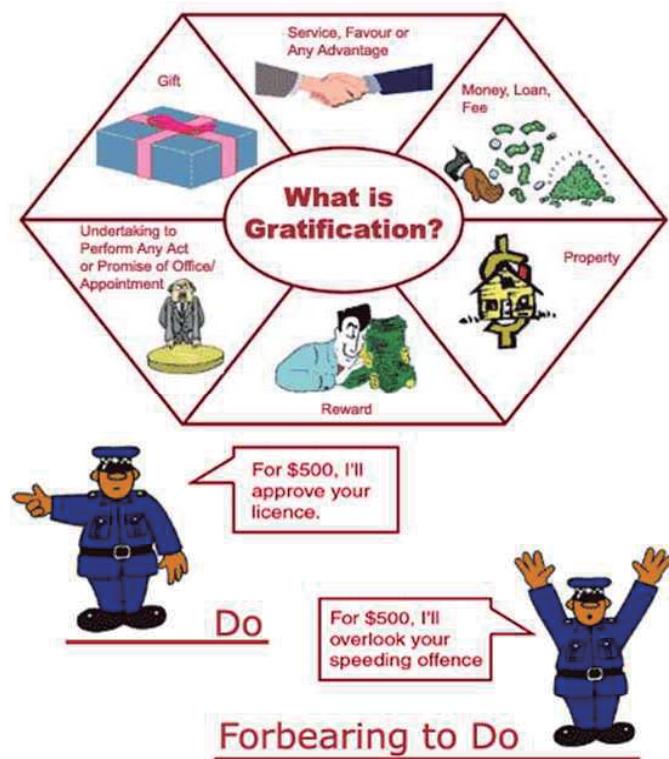
46) 부패방지법 제2조. King hea Joseph(fn 27), p. 39.

47) King hea Joseph(fn 27), p. 39.

문지 않고 서비스, 은혜, 이익, 이에는 무언가의 치별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한다. (e) 상기 (a)에서 (d)까지의 어느 정도의 gratification의 투입, 혹은 약속 등도 포함한다.<sup>48)</sup>

기관장(Principal)은 신탁, 정부, 공공단체의 고용인이나 수익자를 포함한다. 공공단체(public body)는 기업, 위원회, 의회, 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기관 등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sup>49)</sup>

### 향응의 범위



[출처] <http://www.cpib.gov.sg/education/what-corruption>

48) 부패방지법 제2조.

49) King hea Joseph(fn 27), p. 40.

## (2) 금지 및 처벌의 대상

부패방지법에서 금지 및 처벌의 대상은 제5조의 부패행위(punishment for corruption), 제6조 기관(agents)과의 부정한 거래, 제안철회의 부정적 요구(corruptly procuring withdrawal of tenders), 제11조 의원에 대한 중뢰(bribery of Member of Parliament), 제12조 공공단체 구성원에 대한 뇌물(bribery of member of public body) 등이다.

그 밖에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사나 압수 수색 등을 방해를 해서는 안되며(제26조), 부패행위 조사국에 정보제공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제27조)뿐만 아니라 허위의 정보나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금지된다. 그리고 부패행위의 교사(제29조), 미수(제30조), 그리고 공모(제31조) 등도 금지된다.

### 1) 부패의 처벌

부패방지법 제5조에 의하면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하거나 타인과 공동하여 (a) 자기 혹은 타인을 위하여 부정하게 향응(gratification)을 요구, 수수하고 또는 약속하는 것, (b) 자기 혹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인이나 보수 기타 이유로 향응(gratification)을 공여하거나, 약속하고 또는 청약을 하는 것을 행한 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죄로 되어,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sup>50)</sup>

싱가포르에서는 뇌물(bribery)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부패방지법 제5조에 의하여 범죄가 된다.<sup>51)</sup> 위의 규정은 행위자가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묻지 않는 점에서 일반 증·수뢰죄의 규정이

50) 부패방지법 제5조. 森下 忠, 諸外国の汚職防止法制, 国際刑法研究 第14巻, 成文堂, 2013, 142-143頁.

51) Sara G. Zwart, A favorable climate for foreign investment in Singapore: Recent changes in the companies act hold directors of strict standards of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Lawyer Spring, 1987, p. 362.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부정하게’의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 부정이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부정을 의미하며, 그것이 부정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타인의 직무상의 권리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이익을 주는 의도와 함께 행해지는 행위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리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말한다.<sup>52)</sup>

1960년 부패방지법은 많은 다른 혁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적 향응(gratification)을 수령하였다는 죄가 발견될 경우 그에게 부과된 형벌 외에 부가하여 그가 뇌물로서 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뇌물을 수령한 자는 그가 부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범죄행위가 된다. 게다가 위반자에 대하여 어떠한 호의적인 조치가 취해졌는지의 여부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sup>53)</sup>

## 2) 기관(agents)과의 부정거래의 처벌

부패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일반인 간의 뇌물수수행위, 부정거래를 처벌한다.

(a) 기관이 자기 혹은 타인을 위하여 그 기관장(principal)의 업무나 거래에 관계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또는 행위를 한 것, 그리고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에 관하여 유인이나 보수로 부정하게 향응(gratification)을 수수, 취득, 수수의 약속을 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시도한 경우, (b) 어떤 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 혹은 거래에 관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또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에 관하여 유인이나 보수로 그 기관에게 향응(gratification)을 공여, 약속, 청약을 했을 때, (c) 어떤 자가 어떤 기관장과의 이해관계 있는 영수증, 계산서 또는 그 외 서류인 것을 알면서

---

52) 森下 忠, 前掲注 50), 142-143頁.

53) King hea Joseph(fn 27), p. 40.

그 기관장을 기망할 의도로 사용했을 때는 10만 달러 이하의 별금 혹은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거나 혹은 양자를 병과한다.<sup>54)</sup>

외국의 뇌물(foreign bribery)도 부패방지법 제6조와 제37조에 의하여 범죄가 된다.<sup>55)</sup> 부패방지법은 법외 적용되며(extra territorial) 위반행위가 싱가포르 밖에서 행해지든 싱가포르 내에서 행해지든 관계없이 싱가포르 국민에게 적용된다. 외국공무원의 뇌물은 부패방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은 싱가포르의 영역 내이든 영역 밖이든 관계없이 외국의 공무원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뇌물이 외국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sup>56)</sup>

제6조는 특별히 기간간의 부패거래를 금지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유인이나 보상을 위한 만족(gratification)으로서 그것이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다는 것이 증명되는 범죄의 요소이라면 그것이 적극적인 뇌물이든 수동적인 뇌물이든 적용된다.<sup>57)</sup> 싱가포르 법원은 주어진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다. 향응(gratification)이 거래에 부패적 요소가 있었는지, 부패의 의도 내지 범죄적 의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부패하게 수령한 것인지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한다.<sup>58)</sup>

부패적 요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보통의 평균적인 인간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그가 거래를 시작할 때 피고가 의도한 것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부패의 의도나 유죄인식이

54) 부패방지법 제6조.

55) Adefolake Adeyeye, Foreign bribery gaps and salant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implementation, Business Law International 2014. 9, (part: Foreign bribery laws in action).

56) Sara G. Zwart(fn 51), p. 362.

57) Adefolake Adeyeye(fn 55), part: Foreign bribery laws in action.

58) Adefolake Adeyeye(fn 55), part: Foreign bribery laws in action, FN 13, PP v Khoo Yong Hak(1995)2 SLR 283; see Public Prosecutor v. Ng Boon Gay(2013) SGDC 132.

있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건<sup>59)</sup>에서, 법원은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 일반적(ordinary)이고 객관적(objective)인 기준에 의하여 피고가 부패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였는지 또는 알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주관적 심사(subject test) 기준을 채택한다. 만약 의도적으로 법률이나 규칙의 위반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가 부폐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다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Chan Wing Seng)에서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하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하여 부폐에 해당한다면 주관적인 유죄인식의 요소는 증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60)</sup>

### 3)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부폐의 추정

제5조 및 제6조의 죄에 관한 절차에서 정부 혹은 그 기관 혹은 공공 단체(public body)의 고용에 대하여 어떠한 향응(gratification)이 지불되고, 공여되고 혹은 수수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반대의 증명이 없는 한 그 향응은 유인 혹은 보수로 지불되고, 공여되고 혹은 수수된 것으로 본다. 이는 고용에 관한 증·수뢰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하여 설치한 추정규정이다.<sup>61)</sup> 여기에도 부폐방지법의 엄벌방침이 나타난다.

### 4) 의원에 관한 증·수뢰

부폐방지법 제11조는 의원에 대한 증뢰죄를 처벌하고 있다. (a) 의원의 자격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또는 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유인 혹은 보수로 의원에게 향응(gratification)을 청약한 자 또는 (b) 의원이면서 의원의 자격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혹은 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유인 혹은 보수로 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거나 이들 두 가지의 형벌을 병과한다.

---

59) Adefolake Adeyeye(fn 55), part: Foreign bribery laws in action, FN 15, Chan Wing Seng v pp(1997)SGHC 97.

60) Adefolake Adeyeye(fn 55), part: Foreign bribery laws in action, FN 15.

61) 부폐방지법 제8조.

### 5) 공공단체(public body)의 구성원에 관한 증·수뢰

이는 제11조와 같은 행위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에 관하여 행해졌을 때 전조와 동일한 형에 처하는 규정이다.<sup>62)</sup>

#### (3) 부패방지법상의 법령준수 의무

##### 1) 수색방해금지

부패방지법은 조사 및 압수수색 절차 등에서 부패행위조사국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제26조).

(a) 부패행위조사국장, 출입이나 수색의 권한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어떠한 장소에 출입, 수색, 입장 또는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b) 부패방지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나 의무의 수행에 있어서 또는 부패방지법 하에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입장을 하는 경우에 국장 또는 공무원 등을 공격,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 (c) 부패방지법에 의해 직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장 또는 다른 공무원의 합법적 요구에 대하여 따르지 않는 경우, (d)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되는 어떠한 정보의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색방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에 위반하는 것이며, 10000불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들을 병과할 수 있다.

##### 2) 정보제공의무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사와 관련하여 법적인 정보제공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27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주어진 권한에 의하여 국장이나 다른 공무원이 조사할 권리가 있는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

62) 森下 忠, 前掲注 50), 144頁.

있다.” 정하고 있어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한 정보제공의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3) 허위정보 등의 제공 금지의무

부패방지법은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도 허위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허위정보 제공 금지의무 규정은 제공이 금지되는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금지방식을 채택한다. 즉 허위의 정보나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28조에서는 “이 법 또는 형법상 공무원범죄(형법 제165, 213, 214, 215)와 관련된 위반 행위와 관련된 허위의 정보나 호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원인을 야기한 자, 그 밖에 다른 허위정보나 호도 할 수 있는 정보를 국장이나 특별조사관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원인을 야기한 자는 10000불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들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3) 교사 등의 처벌

부패방지법 제29조부터 제31조에서는 부패행위를 교사한 자, 부패행위를 시도한 자, 부폐행위를 공모한 자에 대한 벌칙도 마련하고 있다.

## III. 형법과 형벌

### 1. 형 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은 광의의 형법으로 불린다.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은 협의의 형법, 즉 형법전(Penal Code)이다. 싱가포르의 형법 전의 원점은 1871년에 해협식민지입법의회에서 승인되고, 1872년 9월에 시행된 해협식민지형법전(Strait Settlements Penal Code)에 있다. 이 형법 전이 싱가포르의 형법전이 된 것은 싱가포르가 1946년에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을 때이다. 이 형법전은 그 후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 졌으나 주요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1871년 해협식민지형법전은 1860년 인도형법전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sup>63)</sup> 그러나 1871년 형법전에서는 단지 영국에서 그 당시의 관습법이나 규칙을 한데 모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및 위법성조각사유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법전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싱가포르형법전의 원전은 영국형법을 채용하여 법전으로 편찬한 것은 아니나, 영국의 형법에 그 기원이 있고, 영국의 형법의 법원칙이나 개념은 관련성이 있는 한 오늘날에도 싱가포르의 형법전 기타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이상의 설득력 있는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sup>64)</sup> 1871년 형법전은 제정 이래 수차례 수정되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1973년 개정과 1984년 개정이다. 1973년 개정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졌다. 1984년 형법개정법에서는 약간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규정되었다. 그 후 2006년 형법전의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sup>65)</sup>

형법상 부패관련 규정을 보면 형법 제161조에서 제165조까지는 공무원의 수뢰에 관한 규정이다. 이들 규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향응(gratification) 기타 보수를 받는 것, 어떤 자가 부패 혹은 위법한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향응(gratification)을 받는 것, 어떤 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향응(gratification)을 수수하는 것, 공무원이 상기 범죄의 공범행위를 하는 것, 공무원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아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공무원에 의해 행해지는 절차 혹은 일에 있어서 관계자로부터 무언가의 가치 있는 것을 취득하는 것 등이다.

---

63) 森下 忠, 前掲注 50), 129-130頁.

64) 在シンガポール日本国大使館, シンガポールの司法制度の概要, -特に刑事訴訟法を中心として-, 2010, 5~6頁.

65) [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law\\_of\\_Singapore](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law_of_Singapore), p. 2.

이상의 규정에서 사용되는 공무원이란 주로 내국 공무원을 의미한다. 예컨대 형법 21조는 공무원에는 싱가포르 군인, 정부관리, 정부를 위하여 일하는 자, 및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혹은 법률 서비스위원회(legal service commission) 위원도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여기서는 외국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에서 부패와 관련되어 적용되는 자에는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묻지 않는다. 그래서 문헌에서는 형법의 규정은 공무원에 초점을 두었거나 주로 공무원을 포함하는 규정이라고 기술된다.<sup>66)</sup>

## 2. 형사소송법

1871년에 형법전이 제정되는 것과 함께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Ordinance, No.5 of 1870)이 제정되었다. 형사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영국의 형사소송제도가 채용되었다. 그러나 형법전이 중죄와 경죄의 구별을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법에 따라 형사절차에서는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1873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다. 이 소송법은 모든 범죄를 정식기소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대심원뿐만 아니라 소배심도 폐지 했다.<sup>67)</sup> 그 후 1902년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지만, 현행법은 1985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Code, Cap.68, 1985)이다. 형법전 및 기타 특별형법에 정하는 모든 범죄는 이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소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코먼로의 원칙을 성문화하고 있는 경우에 영연방국가의 법원의 판례가 싱가포르 형사소송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오늘날에도 참고가 되고 있다.<sup>68)</sup>

66)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13733/getting-the-deal-through-anti-corruption-regulation-in-singapore-2014>.

67) 森下 忠, 前掲注 50), 130頁.

68) 在シンガポール日本国大使館, シンガポールの司法制度の概要, –特に刑事訴訟法を中心として–, 2010, 6頁.

싱가포르의 형사소송절차를 보면,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한다. 그 밖에 부패행위조사국이나 중앙마약사무국(Central Narcotics Bureau)·이민과 검문 기구(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 등이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에 한하여 수사할 수 있다. 부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한다.<sup>69)</sup>

### 3. 형 벌

싱가포르의 가혹한 형벌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다. 가혹한 형벌체계의 방어와 전체적 통제시스템에 관하여 리콴유 전 총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형사법적 입법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죄입증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범죄자의 권리라기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지속적인 복지이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서구의 사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sup>70)</sup>

싱가포르에서 형벌은 사형, 구금, 태형, 벌금 등이 있다. 형벌의 특징을 보면, 일정량의 마약소지도 사형범죄로 된다.<sup>71)</sup> 통계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40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대부분은 마약거래범죄에 의한 것이었다. 인구비율과의 관계에서는 싱가포르는 세계 1위의 사형 집행국으로 되어 있다.<sup>72)</sup> 구금제도에서의 특징은 싱가포르에서는 집행유예와 같은 제도는 없다는 점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반드시 집행된다.<sup>73)</sup>

싱가포르에서 형벌 중 가장 놀라운 것은 태형이라고 할 수 있다. 태형은 등나무 줄기로 만든 태형수가 의사 입회 하에서 수형자의 등을 힘을

69) 박홍우, 싱가포르의 사법제도, 법조 제56권 제11호, 2007, 358면.

70) George Baylon Radics(fn 8), p. 63.

71) [http://www.north.ad.jp/ssn/ssnjrnlsssay/jinno\\_singcaning.html](http://www.north.ad.jp/ssn/ssnjrnlsssay/jinno_singcaning.html), p. 2.

72) [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law\\_of\\_Singapore](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law_of_Singapore), p. 3.

73) 森下 忠, 前掲注 50), 134頁.

모아 때리는 형이다. 싱가포르의 태형을 정당화하는 핵심은 규율이나 훈련이다. 유교사상도 규율이며, 아시아의 가치도 규율을 포함한다. 보통법사상도 규율을 요구한다. 리콴유도 엄격한 규칙과 규율은 훌륭한 사회 형성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74)</sup>

싱가포르는 벌금왕국이다. 이는 싱가포르에서는 세세한 일상생활상의 행위도 용서 없는 벌금이 과해지기 때문에 “Singapore is a fine country” 말로도 표현된다. 싱가포르는 깨끗한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으로 작은 행위에도 벌금이 과해지기 때문에 국민은 벌금왕국 싱가포르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fine이라는 말이 벌금 외에도 아름다운, 대단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에서는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방책으로 벌금이라는 형벌이 사용되는 것이다.<sup>75)</sup>

#### IV. 부패이익몰수법

부패행위에 대하여 비용이 지불되어서는 안된다는 원리는 1989년의 부정축재몰수법(Corruption Confiscation of Benefits Act)의 제정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이 법은 1999년 이후에 부패이익몰수법(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제65장(A)로 대체되었으며, 이 법에 의하면 부패행위자가 그가 행한 범죄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부패행위자가 취득한 이익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법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재산적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74) George Baylon Radics(fn 8), p. 83.

75) 森下 忠, 前掲注 50), 136頁.

## V. 장관행동강령

### 1. 장관행동강령의 제정 및 공포

장관의 처신 및 개인 신변 정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는 장관 대상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Ministers)은 1954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 강령은 경우에 따라 몇 차례 수정되기도 하였다. 정부 각료의 지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장관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장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정부의 불명예를 초래하지 말아야 함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따라서 모든 장관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항상 성실성·정직성·청렴성·근면성·책임감 등에 대한 최상의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관 대상 행동강령은 이들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장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 규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본 “의무 규칙들”을 위반할 경우 장관은 해임될 수 있다. 장관은 개인적으로 본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본 강령이 요구하는 최선의 행동은 어떤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관행동강령은 (1) 사적 이해관계의 공개, (2) 법인 이사 및 사업 파트너쉽 등의 유급업무 중단, (3) 재정적 이해관계의 회피, (4) 공무원들과의 관계, (5) 언론관여 금지, (6) 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장관행동강령의 내용

#### (1) 사적 이해관계의 공개

모든 장관은 부패 및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책무간의 잠재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명 즉시 대통령에게 소득원천, 모든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산, 금전적 채무 등을 공개해야 한다.

(2) 법인 이사 및 사업파트너십 등의 유급업무 중단

전문 법인이나 기타 사업의 파트너인 장관은 취임 후 즉시 그러한 유급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법인의 일상적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3) 금전적 이해관계

장관은 자신의 직위와 사적인 금전적 이해 간의 실제적인 또는 의견 상의 충돌을 회피하여야 한다.

(4) 공무원들과의 관계

장관은 대민서비스와 관련하여 임용 또는 승진후보자인 특정인을 지원하는데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장관은 공무원에게 싱가포르 대민 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도덕성, 공정성, 청렴성, 정직성에 배치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행하도록 또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 또는 요청할 수 없다. 장관은 모든 정치적 사안과 대중적 논란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 중립을 유지할 공무원의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5) 언론관여 금지

장관은 자신의 책무나 직무와 양립할 수 없거나 직무에 저촉되는 모든 형태의 언론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6) 선물 및 향응 수수

장관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래의 그러한 시도를 거부해야 하며, 선물이 동반된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VI. 공무원 행동강령

싱가포르는 공무원 및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단체 및 모든 기관들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Do's and Don'ts for Public Officers)은 7가지 유형의 해야 될 일과 24가지 유형의 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sup>76)</sup>

해야 될 일(A list of “Dos” for Public Officers)<sup>77)</sup>

1. 어떠한 부패의 제안도 보고할 것
2. 공식적 거래관계가 있는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를 특혜의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관계로 한정할 것
3.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때문에 어느 기업의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 관련된 프로젝트의 감독직을 사퇴할 것.
4. 공식적 관계에서 호의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우 할 것
5. 부패방지법 규정, 공직자 행동을 감독하는 부서의 정책이나 명령을 숙지 할 것
6.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직무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상급 자와 상의할 것
7. 자신이 소속한 부서에 가장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항상 충성할 것

76) <http://www.cpib.gov.sg/education/preventive-measures>.

77) <http://www.cpib.gov.sg/education/preventive-measures>.

해서는 안되는 일(A list of “Don’ts” for Public Officers)<sup>78)</sup>

1. 직무상 해야 할 일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국민 누구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수령하지 말 것
2. 직무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가로 어느 누구로부터 보상을 수령하지 말 것
3. 직무수행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호의를 보이거나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로부터 보상을 수령하지 말 것
4. 직무수행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로부터 보상을 수령하지 말 것
5. 공식적 문서에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진술이나 사항을 입력하지 말 것
6. 동료들에 의해 특혜의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공식적 거래관계가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 식사나 향응에의 초대를 수락하지 말 것
7. 공식적 거래관계가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떠한 행사에서라도 선물이나 증정품을 받지 말 것
8. 당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식적 거래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를 초대하지 말 것
9.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의 유급 파트타임 업무나 영리적 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
10. 공식적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제공한 전문적 서비스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를 수령하지 말 것
11. 자신이 감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업무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계약자로부터 보상이나 보수를 수령하지 말 것
12. 공식적 거래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의 사업에도 투자하지 말 것
13. 공식적 거래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 하도급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지분의 참여 및 제공을 수령하지 말 것
14. 특정인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자로부터 수수료나 뇌물을 수령하지 말 것

---

78) <http://www.cpib.gov.sg/education/preventive-measures>.

- 15. 공식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무상서비스(예컨대 교통수단, 무상수리 등등)의 제공을 수령하지 말 것
- 16. 공식적 거래관계가 있는 자들과 친분관계를 맺거나 호의를 베풀지 말 것
- 17.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이유로 또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자로부터 해외여행을 제공받지 말 것
- 18.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계약자의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 계약자와 공식적인 회의나 협상을 하지 말 것
- 19. 공식적 거래관계가 있는 계약자의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하지 말 것
- 20. 공식적 거래관계가 있는 계약자로부터 신용의 형태나 담보제공의 형태로 대부를 제공받지 말 것
- 21. 계약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형태의 고용 제공을 수령하지 말 것
- 22. 계약자로 하여금 당신의 청구서나 할부금을 지급하도록 하지 말 것
- 23. 직무를 면하기 위하여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도록 하지 말 것
- 24. 대가를 수령하든 하지 않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도록 계약자에게 조언하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에 해가 되는 어떠한 일을 하지 말 것

## VII. 반부패 국제조약 등에 가입

싱가포르는 국제연합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2009년 서명하고 비준하였다.<sup>79)</sup> 부패행위조사국은 아시아와 부패와의 전쟁 및 방지를 위한 아시아 반부패기구(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with Asian anti-corruption agencies)MOU를 체결하였다.<sup>80)</sup> 게다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하에서 범죄수사와 증거수집에 있어서 다른 국가를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sup>81)</sup>

79) Philip M. Nichols, The psychic cost of violating corruption laws, Vanderbilt Journal Transnational Law, 2012, p. 176.

80) Herbert Smith, “Guide to Anti-Corruption in Asia”(2012/13) at p. 64.

81)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 § 9.

## 제 3 절 부패방지 조직체계

### I . 부패 행위 통제 유형

아시아의 부패통제 시스템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부패방지법과 독립기관을 두지 않은 경우(Mongolia), 부패방지법과 많은 기관을 둔 경우(India, the Philippines, China), 부패방지법과 독립기관을 둔 경우(Hong Kong, Singapore) 등이 그것이다.<sup>82)</sup>

미국과 인디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공공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중기관전략(multi-agency strategy)을 채택한다. 다중기관접근은 부패에 있어서의 공적 영역에 대한 조사, 방지, 교육을 담당하는 상호 교차적 기관(cross-cutting agencies)으로 특징지워진다.<sup>83)</sup> 다중기관 전략 하에서는 집중적이고 강력한 기관이 없다. 대신에 그들의 핵심적 능력이나 자치권을 보유한 전통적으로 사법적 행정적 기능이 존재한다. 다중기관전략의 성공적 예가 미국의 공직자 윤리국(OGE)이다. 미국은 부패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중기관접근을 채택한다. 부패의 방지를 위한 단일의 강력한 기관이 없다. 공직자윤리국은 조사권이나 기소권한을 갖지 않는다.<sup>84)</sup>

싱가포르는 세 번째 유형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이 부패에 대응하여 부패를 척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sup>85)</sup> 집중적 반부패기관 패러다임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싱가포르를 포함한 30개국 이상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집중적 반부패기관(the Centralized

82) Jon S.T. Quah, Globalization and Corruption Control in Asian Countries: The Case for Divergence, 4 Pub. Mgmt. Rev. 453 (2002). p. 457-64.

83) Joanna MacMillan, Reformasi and public corruption: Why Indonesia's anti-corruption agency strategy should be reformed to effectively combat public corruption,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2011, p. 597.

84) Joanna MacMillan(fn 83), p. 598.

85) C. Raj Kumar, Corruption,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Challenges for promoting access to justice in Asia, Michigan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8, p. 526

Anti-Corruption)의 형태를 설립하고 있다.<sup>86)</sup> 집중적 반부패기구는 반부패 활동의 핵심적 영역에서 집중된 리더쉽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정부기관이다.<sup>87)</sup>

### 부패행위 통제유형

| 유 형              | 국 가                           |
|------------------|-------------------------------|
| 독립기관형            | Hong Kong, Singapore          |
| 다중기관형            | India, the Philippines, China |
| 별도의 기관을 두지 않은 유형 | Mongolia                      |

## II.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 1. 부패행위 조사국의 설치와 의의

부패행위조사국의 주요 임무는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다.<sup>88)</sup> 부패행위조사국 설립 전에는 부패는 싱가포르 경찰의 특별 분과인 반부패 브런치의 관할에 속하였다. 1952년이 되어서야 부패행위조사국은 다른 조사기관과는 완전히 별개의 구별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 때에는 싱가포르는 부패가 중계무역지로서 싱가포르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고 영국식민정부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겉잡을 수 없이 만연되어 있는 부패를 경험하였다.<sup>89)</sup> 비록 부패행위조사국이 부패와 대응하여 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권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그것의 기능은 1937년 부패방지규정의 단점으로 인하여 다소 제한되었다.<sup>90)</sup> 초기 부패행위

86) Joanna MacMillan(*fn 83*), p. 599.

87) Joanna MacMillan(*fn 83*), p. 600.; Patrick Meagher & Caryn Voland, U.S. Agency for Int'l Dev., Anticorruption Agencies (ACAs): Office of Democracy and Governance Anticorruption Program Brief 4 (2006) at 5., available at, [http://www.usaid.gov/our\\_work/democracy\\_and\\_governance/publications/pdfs/ACA\\_508c.pdf](http://www.usaid.gov/our_work/democracy_and_governance/publications/pdfs/ACA_508c.pdf).

88) Philip M. Nichols(*fn 79*), p. 176.

89) Philip M. Nichols(*fn 79*), p. 176.

조사국은 부패행위 증거수집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무원 대다수가 부파행위조사국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졌고, 협조도 하지 않았다.<sup>91)</sup> 결국 부파행위조사국은 말레이시아 부파방지위원회(MACC)로부터 독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sup>92)</sup>

그런데 1959년 인민행동당이 집권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sup>93)</sup> 부파방지법의 제정으로 부파범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고, 그것은 동시에 부파행위조사국에게 보다 크고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였다. 부파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시도와, 부파관료가 추방으로 부파행위조사국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sup>94)</sup> 게다가 부파행위조사국은 정부부서의 장과 일반 국민에게 협의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권한도 부여받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사권도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sup>95)</sup> 개정 전에는 부파행위조사국 공무원은 처음에 형법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개정 후에는 부파방지규정 하에 기소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공범자 증거의 수락은 법원에서 협의자의 유죄입증의 기회를 증가시켰다.<sup>96)</sup>

부파행위조사국은 독립기관이며,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부파행위의 조사와 방지에 있다. 조사국장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를 한다. 게다가 부파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부파하기 쉬운 부문(기관)과 공공단체의 업무수행과정이나 방식 등을 심사함으로써 부파를 방지한다. 시스템에 존재하는 부파와 잘못된 행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행정적 취약점(weakness)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담당기관의 수장에게 방지와 구제대책을 권고한다.<sup>97)</sup>

---

90) King hea Joseph(fn 27), p. 53.

91) 유문무(주 35), 192면.

92) Philip M. Nichols(fn 79), p. 176.

93) 유문무(주 35), 192면.

94) King hea Joseph(fn 27), p. 42.

95) King hea Joseph(fn 27), p. 42.

96) King hea Joseph(fn 27), p. 42.

97) Eugene Kheng-Boon Tan, Law and Values in Governance: The Singapore Way,

## 2. 부패 행위조사국의 역사

부패 행위조사국은 1952년에 설립되어, 부패 행위조사국이 위치하고 있었던 장소에 따라 대법원 시설(Supreme Court Days, 1952-1961), 스템포드 가 시절(Stamford Road Days, 1962-1984), 힐 중심가 시절(Hill Street Days, 1984-1998), 캔톤먼트 가 시절(Cantonment Road Days, 1998-2004)을 거쳐 오늘(Lengkok Bahru, 2004 이후)에 이르고 있다.<sup>98)</sup>

### 부패 행위조사국의 시기구분

| 기 간  | 시기구분      | 위치            |
|--|-----------|---------------|
| 1952-1961  | 대법원 시설    | 대법원 빌딩        |
| - 경찰로부터 분리 독립<br>- 민간조사관과 파견 상급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작은 조직                           |           |               |
| 1962-1984  | 스템포드 가 시절 | Stamford Road |
| - 독립된 공간 확보<br>- 강력한 조사권 부여  |           |               |
| 1984-1998  | 힐 중심가 시절  | Hill Street   |
| - 새로운 시작<br>- 부패 행위조사국에서 신입직원 교육 시작<br>- 부패 행위조사국의 평가(Quality Journey)도 시작 |           |               |

Hong Kong Law Journal 2000, p. 111.  
 98) <http://www.cpib.gov.sg/about-us/our-history>.

## 제 2 장 싱가포르의 부패관련 법제

|  |           |                 |
|--|-----------|-----------------|
| 1998-2004  | 캔톤먼트 가 시절 | Cantonment Road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O, SQC, PDS 자격수상</li> <li>- 인력시스템 개선에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인재상 수상</li> </ul>   |           |                 |
| 2004-현재  | 랭콕 바루 시절  | Lengkok Bahru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과학범죄수사대(Computer Forensic Unit)를 설치</li> <li>- 부패행위조사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상징기(CPIB Flag) 채택</li> <li>- 부패예방을 위한 국내·국제적 공조관계 유지</li> </ul> |           |                 |

### (1) 대법원 시절(Supreme Court Days, 1952-1961)

부패행위조사국은 1952년 9월에 독립적인 기관으로 모든 부패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식민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였던 미들스톤(Mr. Middleston Smith)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민간조사관과 파견 상급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작은 조직이었다. 권한도 크지 않았으며, 부패행위조사국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법원빌딩에서 두 번째 층의 작은 공간에 적합한 조직이었다. 미들스톤도 대법원에 위치한 부패행위조사국의 위치가 일반대중에게 심리적인 중요도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1952년 10월 부패행위조사국의 구성원은 13명이었다. 대부분의 새로 설립된 조직이 그러하듯이 구성원의 모집과 정기적인 조사국의 재정비는 계속되었다.<sup>99)</sup>

### (2) 스템포드 가 시절(Stamford Road Days, 1962-1984)

초창기에는 부패행위조사국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반부패법은 부적합하였고, 부패혐의자에 대한 증거 수집을 방해하였다. 1959년에 인민행동당이 힘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러한 상황은 변하게 되었다.

99) <http://www.cpib.gov.sg/about-us/our-history>.

부패공무원에 대하여 확실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으로부터 해임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였다. 부파행위조사국에 대한 일반대중의 확신이 점점 커졌고, 정부가 반부패 추진정책이 진지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sup>100)</sup>

부파행위조사국은 1961년 스템포드 거리(Stamford Road)에 있는 3층으로 된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공간이 주어졌다. 그 후 23년 동안 부파행위조사국인 이 건물에서 활동하였다. 행정적으로 부파행위조사국은 처음에는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소속하에 있었다. 1959년 내부부(Ministry of Home Affairs)로 이관되었다가, 1963년부터 1965년에는 총리실이 부파행위조사국을 책임지게 되었다. 1965년부터 1968년에는 다시 검찰청(AGC)소속으로 변경하였다가 1968년부터 총리실 소속으로 다시 변경되었다.<sup>101)</sup>

### (3) 힐 중심가 시절(Hill Street Days, 1984-1998)

이 기간 동안 부파행위조사국은 힐 중심가(Hill Street Center)로 이전하였다. 1990년대까지 많은 개선이 있었고, 1994년에 “새로운 시작(Fresh Start)”라는 모토로 시작하였다. 1995년에는 내부의 기본 교육과정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찰대학에서 실시되었던 부파행위조사국 신입직원 교육과정이 1996년 8월 26일에는 그것을 대신하여 기본교육 과정에서 실시되었다. 기본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마치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 신입직원이 갖추어야 할 부파행위 조사권 등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9개월의 경찰대학 과정은 경찰교육이나 훈련에 필요에 적합하도록 준비되었다. 1995년에는 거짓말탐지기 테스트도 조사도구도서 도입되었다.<sup>102)</sup>

---

100) <http://www.cpib.gov.sg/about-us/our-history>.

101) <http://www.cpib.gov.sg/about-us/our-history>.

102) <http://www.cpib.gov.sg/about-us/our-history>.

힐가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 동안 부패행위조사국의 평가(Quality Journey)도 시작되었다. 1997년에 부패행위조사국은 조사절차에 관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인증을 받았다.<sup>103)</sup>

#### (4) 캔톤먼트 가 시절(Cantonment Road Days, 1998-2004)

1998년 5월 9일 캔톤먼트 거리(Cantonment Road)의 케펠(Keppel) 초등학교 부지로 이전을 하였다. 그리고 조사목적으로 한쪽에서만 협의자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설치하였다. 부패행위조사국은 1997년 ISO 9000 표준을 달성한 이후, 1998년에는 싱가포르 품질등급(Singapore Quality Class, SQC)을 수상하였다. 1999년에는 인력개발표준(People Developer Standard, PDS)을 수상하였다. 부패행위조사국은 ISO, SQC, PDS 등 세 가지 자격수상을 달성함으로써 2000년과 2002년에 최우수 기관에 수여되는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 for Organization Excellence)을 수상하였다. 2003년에는 부패행위조사국의 평가이행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맞았다. 부패행위조사국이 인력시스템의 개선에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최우수인재상(People Excellence Award)을 수상하였다. 2004년에는 싱가포르 혁신 등급(Singapore Innovation Class)과 싱가포르 서비스 등급(Singapore Service Class)이라는 두 개의 표창을 수상하였다.<sup>104)</sup>

#### (5) 렁콕 바루 시절(Lengkok Bahru, 2004 이후)

2004년 4월 부패행위조사국은 렁콕 바루에 있는 현재의 부지로 이전하였다. 2004년 7월 17일 부패행위조사국은 컴퓨터와 관련된 증거의 법정 증거조사 절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 과학범죄수사대(Computer

---

103) <http://www.cpib.gov.sg/about-us/our-history>.

104) <http://www.cpib.gov.sg/about-us/our-history>.

Forensic Unit)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부패행위조사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 8월에는 부패행위조사국의 상징기(The CPIB Flag)가 만들어졌다. 현재에도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행위 조사의 기술, 표준, 전문화, 첨단기술의 사용, 컴퓨터과학범죄수사 등을 개선함으로써 운영에서의 질적 향상을 강화 및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영역에서도 부패 예방적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파트너쉽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적 우월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지식관리와 자기개발 등의 활동에 투자를 하고 있다.<sup>105)</sup>

#### 부패행위조사국 상징기



[출처] <http://www.cpib.gov.sg/about-us/cpib-flag-and-logo>

### 3. 부패행위조사국의 구성

#### (1) 부패행위조사국장 등의 임명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조사국 임명권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패행위조사국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05) <http://www.cpib.gov.sg/about-us/our-history>.

부패행위조사국은 설립초기에는 아주 작은 조직이었다. 1959년 부패행위조사국에는 전체 8명의 구성원이 있었다. 1978년 사무실 조직기구에는 전체 45명의 구성원이 있었으며, 12명의 지원 스태프(staff)가 있었다.<sup>106)</sup>

부패방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패방지국장(Director of the CPIB)은 대통령(President)에 의하여 임명되며, 총리실의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부패방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은 부패행위조사국의 부국장(Deputy Director, 차장)과 다수의 부국장보(assistant director) 및 특별조사관(special investigator)의 임명권을 가진다. 부패행위조사국장, 부국장, 부국장보 및 특별조사관은 형사법적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sup>107)</sup>

1952년 설립초기에는 부패행위조사국 상급공무원은 파견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었다. 점차로 보다 민간인으로 채용되었다.<sup>108)</sup>

### (1) 부패행위조사국의 구성원

#### 1) 부패행위 조사관(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Officer, CPIO)

부패행위 조사관은 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임무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중에서도 매우 역동적인 구성원의 하나이다. 조사의무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국제적 업무, 정책수립, 공공교육과 같은 다른 영역의 업무를 담당한다. 부패행위 조사관에는 두 개의 경력과정이 있다. 조사팀을 이끄는 리더십 트랙, 재정조사 정보 및 컴퓨터과학수사와 같이 특수한 영역의 전문영역을 담당하게 되는 전문가트랙이 있다.<sup>109)</sup>

---

106) King hea Joseph(fn 27), p. 63.

107) 부패방지법 제4조 제1항.

108) King hea Joseph(fn 27), p. 64.

109) <http://www.cpib.gov.sg/careers/corrupt-practices-investigation-officer-cpio>.

## 2) 부패행위 조사관보(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Assistant, CPIA)

부패행위 조사관보는 부패와의 범죄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역동적인 공무원 팀의 하나이다. 소환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체포나 피고인의 호송, 서류의 압수 및 검증업무의 조력, 기본적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석이나 보증금의 업무에 담당한다.<sup>110)</sup>

## 3) 관리집행관(Management Executive)

관리집행관은 부패행위조사국의 최상의 서비스제공기준을 확정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입법, 국제적 관계, 전략적 계획수립, 기업 관련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현재의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을 검토한다. 인적 자원, 재정, 내부감사, 기업관련 서비스 등의 체계적인 운영을 관리한다. 법인사무국하의 관련부서에서 직무순환 등의 기회를 가진다.<sup>111)</sup>

# 4.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직

부패행위조사국은 운영부(Operations Department), 법인사무부(Corporate Affairs Department), 조사부(Investigation Department) 등 세 개의 주요 국으로 구분된다.<sup>112)</sup>

## (1) 운영부

운영부에는 정보국(Intelligence Division)이 있다. 정보국은 조사부의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운영관리 및 지원국(Ops Management & Support Division)은 컴퓨터범죄수사대

---

110) <http://www.cpib.gov.sg/careers/corrupt-practices-investigation-assistant-cpia>.

111) <http://www.cpib.gov.sg/careers/management-executive>.

112) King hea Joseph(fn 27), p. 64. 설립초기의 부서명과 기능이 현재와는 차이를 보인다.

(Computer Forensic Branch), 거짓말탐지부서(Polygraph Branch), 운영관리부서(Ops Management Branch)를 통하여 조사부를 지원한다.<sup>113)</sup>

## (2) 법인사무부

법인사무부에도 많은 지원국을 두고 있다. 인재관리 및 개발국(People Management & Development Division)은 부파행위조사국의 전략 방향에 맞추어 인적자원전략을 구상하고 검토하며 시행한다. 인재관리부서(People Management Branch)는 그날그날의 인재관리행정과 운영을 관리한다. 인재개발부서(People Development Branch)는 개별 공무원들의 경력의 개발과 훈련을 감독한다. 재정행정국(Finance & Administration Division)은 재정부서와 행정부서로 구분된다. 재정부서(Finance Branch)는 부파행위조사국의 재정, 조달, 자산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행정부서(Administration Branch)는 다양한 행정적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 계획시설부(Project & Facilities Branch)는 사회기반 시설이나 설비 등의 개발계획과 시설의 유지 및 지원에 관하여 감독한다. 계획, 정책기업관계국(Planning, Policy & Corporate Relations Division)에서는 부파행위조사국의 전략적 계획, 조직적 발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파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 개발, 정책검토, 정책적 입장을 조정한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국제적 토론의 장에 부파행위조사국의 개입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부파행위조사국의 국제관계적 정책의 전략을 수립한다. 이 국은 기관의 기업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반부패에 대한 공공교육과 지원노력을 한다. 정보기술국(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은 부파행위조사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부파행위조사국의 운영에 투입하고 장착시키도록 노력한다.<sup>114)</sup>

---

113) <http://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structure>.

114) <http://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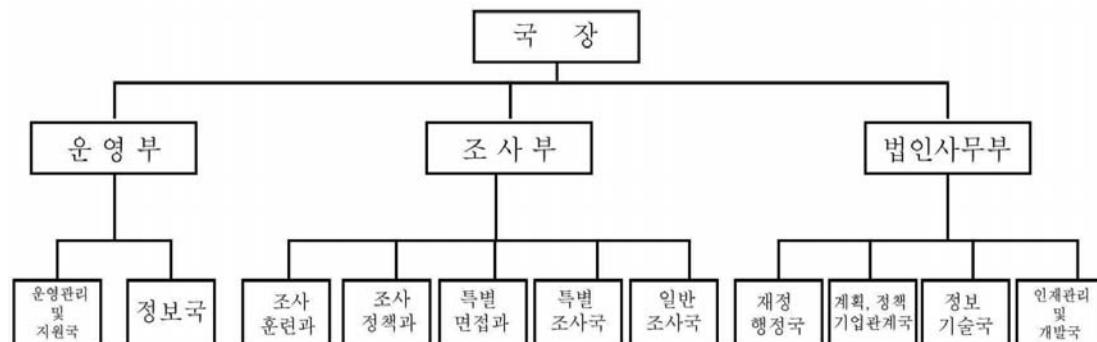
### (3) 조사부(Investigation Department)

조사부는 부패방지법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부파행위조사국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sup>115)</sup> 조사부는 2개의 국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야의 부패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과 사적 영역에서의 부패를 다루는 국으로 구분한다.<sup>116)</sup>

완성된 조사보고서는 모든 증거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된다. 기소는 검사의 문서화 된 승인에 의해 제기되며, 검사의 문서로 된 승인 또는 동의에 의하지 않고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sup>117)</sup>

공직자에 대하여 법정기소를 하기에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동의서와 함께 징계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이송된다.<sup>118)</sup>

부파행위조사국 조직도



[출처]: <http://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structure>

115) King hea Joseph(fn 27), p. 65.

116) <http://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structure>.

117) 부패방지법 제33조.

118) <http://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structure>.

#### 4. 부패행위조사국의 권한

##### (1) 조사권

형법 제165조(공무원 수뢰죄) 또는 제213조에서 제215조(선물 및 향응수수)를 위반하였거나, 위반의 혐의가 있거나, 위반을 교사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어떠한 성문법상의 위반행위의 경우에 부패행위조사국장 또는 특별조사관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주어진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조사권한과 관련한 모든 또는 개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sup>119)</sup>

또한 부패방지법 위반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검사는 부패행위조사국장 또는 특별조사관 등에게 특별한 명령의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명령은 은행계좌, 주식계좌, 매입 및 비용계좌, 모든 은행의 안전금고 등 모든 계좌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한다.<sup>120)</sup>

검사의 명령에 의해서도 형사소송법상의 경찰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검사는 모든 성문법위반의 경우에 부패행위조사국장이나 특별조사관에게 형사소송법상의 경찰권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sup>121)</sup>

그리고 부패혐의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의 부인이나 자녀 또는 기관의 은행통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부패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검사는 은행통장에 대한 조사권<sup>122)</sup>과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sup>123)</sup>

---

119) 부패방지법 제17조.

120) 부패방지법 제18조 제1항.

121) 부패방지법 제19조.

122) 부패방지법 제20조.

123) 부패방지법 제21조.

## (2) 압수 · 수색권한

치안판사나 부패행위조사국장은 부패행위 등의 위반과 관련한 증거를 담고 있는 기록, 물품, 재산 등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특별조사관이나 경찰의 압수 · 수색권한을 영장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판사나 부패행위조사국장은 기록, 물품, 재산 등을 수색 · 압수할 수 있는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관이나 경찰이 그러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sup>124)</sup>

만약 그러한 기록, 물품, 재산 등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수색영장을 받는 것이 자연되어 압수 · 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특별조사관이나 경찰관이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영장에 의해 부여된 것과 모든 권한을 영장 없이 행사할 수 있다.<sup>125)</sup>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사에 임하게 되는 공무원은 싱가포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그와 그의 가까운 친척의 재산에 대한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소득세감독관, 은행지점장, 관계부서나 공공단체의 장은 부패위반혐의자와 관계가 있는 정보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것도 법위반행위에 해당 한다.<sup>126)</sup>

## (3) 체포권한

부패행위조사국장과 특별조사관은 영장 없이 부패방지법의 위반과 관련되었다는 믿을만한 정보나 합리적인 신고에 의하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sup>127)</sup> 부패행위조사

---

124) 부패방지법 제22조 제1항.

125) 부패방지법 제22조 제2항.

126) King hea Joseph(fn 27), p. 41.

127) 부패방지법 제15조 제1항.

국장과 특별조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체포된 사람이 소유한 물품 등이 범죄의 결과이거나 증거라고 생각된다면 그러한 것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일 경우 여성에 의한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28)</sup>

체포된 모든 사람은 부패행위조사국이나 경찰서로 보내진다.<sup>129)</sup>

부패행위조사국국장, 부국장, 부국장보, 특별조사관 등은 그의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무장을 할 수 있다.<sup>130)</sup>

#### (4) 기소권한

부패행위조사국은 기소권한은 갖지 않는다.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사부는 두 개의 부서로 나누어진다. 공공부문을 조사하는 것과 민간부문을 조사하는 기구로 구분되며,<sup>131)</sup> 운영부(Operations Department)는 일반적인 부패와 특수한 상황과 관련되어 수집되거나 처리된 정보를 입수하는 정보과(Intelligence Division)를 통하여 조사를 행한다.<sup>132)</sup>

부패행위조사국은 기소는 행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사건을 송부한다. 검찰총장은 기소에 관한 결정을 하며, 사건의 기소에 대하여 관리한다.<sup>133)</sup> 부패방지법 제3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기소는 검사의 동의에 의하거나 검사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5) 그 밖의 활동

그 밖에 부패행위조사국은 공무원 특히 부패와 자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강의와 세미나를 개최하며,<sup>134)</sup> 해외의

---

128) 부패방지법 제15조 제2항.

129) 부패방지법 제15조 제3항.

130) 부패방지법 제15A조.

131) Philip M. Nichols(fn 79), p. 176.

132) Philip M. Nichols(fn 79), p. 176.

133) Philip M. Nichols(fn 79), p. 177.

134) Eugene Kheng-Boon Tan(fn 97), p. 111.

부패척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부패행위조사국은 아시아와 부패와의 전쟁 및 방지를 위한 아시아 반부패기구(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with Asian anti-corruption agencies)와 MOU를 체결하였으며,<sup>135)</sup>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하에서 범죄수사와 증거수집에 있어서 다른 국가를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sup>136)</sup>

### 5. 부패행위조사국의 부패행위 처리절차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고발에 대한 조사권한이 법률에 의해 부여된다. 부패행위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다른 파악할 수 있는 행위를 조사한다. 모든 부패 고발행위가 부패행위조사국에 접수되면 고발평가위원회(Complaints Evaluation Committee, CEC)에 평가를 위해 보내진다. 임원들로 구성되는 고발평가위원회는 부패고발을 살펴보고, 그러한 행위가 부패행위조사국의 권한범위에 속하는지, 고발행위가 조사나 후속 조치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부패행위조사국의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발의 경우는 그러한 고발은 관련기관으로 이송한다. 고발행위가 너무 모호할 경우에는 부패행위조사국은 그것에 의거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고발인이나 정보원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거래된 뇌물의 양, 날짜, 시간, 장소, 뇌물거래방식, 거래된 뇌물에 대한 대가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이 관련 당사자의 신분과 함께 상세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조사가 진행되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법원에 기소가 되며, 부서의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징계절차로 이행된다.<sup>137)</sup>

---

135) Herbert Smith, “Guide to Anti-Corruption in Asia”(2012/13) at p. 64.

136)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 § 9.

137) <https://www.cpib.gov.sg/eservices/reportingproviding-information-corruption-offences/how-cpib-deals-corruption-complaints>.

부패행위조사국은 14일 이내에 접수된 부패고발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부패고발행위가 현재 진행 중인 부패행위와 관련된다면 부패행위조사국은 위반자를 체포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138)</sup>

## 6. 타 국가기관과의 공조

싱가포르의 부패방지시스템은 형사사법시스템의 하나로 운영된다. 따라서 부패행위조사국은 타 국가기관이나 그 밖에 조직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한다.<sup>139)</sup>

부패행위조사국은 검찰청(Attorney-General's Chambers, AGC)과 법원을 구성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부분이다.<sup>140)</sup> 판결을 하는 기구로서 법원과 기소를 하는 기구로서 검찰청 그리고 조사기구로서 부패행위조사국과 다른 집행기관이 있다. 모든 부패와 관련된 사건은 조사가 완료되면 부패혐의자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기 전에 검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sup>141)</sup> 그 후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무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많은 다양한 정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부기관도 역시 그들이 우연히 알게 되거나 지득한 부패사례를 부패행위조사국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부패행위조사국은 정부기관 외에도 직무수행을 위하여 역시 다른 다양한 사적 조직과도 협력한다. 그 밖에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의 방지와 관련하여 부패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다른 다양한 정부부서와 협력한다. 공무원대학

---

138) <https://www.cpib.gov.sg/eservices/reportingproviding-information-corruption-offences/how-cpib-deals-corruption-complaints>.

139) <https://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s-we-work-closely>.

140) <https://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s-we-work-closely>.

141) 부패방지법 제33조.

과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부패행위조사국은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부패예방 및 방지프로그램에 관여한다.<sup>142)</sup>

부패행위조사국은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해외연수프로그램(Learning Journey's Programme)을 실시한다. 해외연수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하여 싱가포르에서의 부패통제의 제3의 중요한 전략조직으로서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를 한다.<sup>143)</sup>

### III. 그 밖에 부패행위방지 기구

부패와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기구는 부패행위조사국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지만, 그 밖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반부패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다른 조직이 있다.<sup>144)</sup>

#### 1.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공공서비스위원회는 1951년에 설립되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통제권한을 행사한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싱가포르 헌법 제10장에 의해 구성된다.<sup>145)</sup> 공공서비스징계절차규정(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하에서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임명한다. 공무원의 유죄가 인정되면 공공서비스위원회는 해임 및 강제퇴직을 포함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패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는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사와 조치를 위해서 부패행위조사국으로 보내진다.<sup>146)</sup>

---

142) <https://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s-we-work-closely>.

143) <https://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s-we-work-closely>.

144) King hea Joseph(fn 27), p. 66.

145) 싱가포르 헌법 제105조.

146) King hea Joseph(fn 27), P. 66.

## 2. 싱가포르 재무부 예산국(Budget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재무부 예산국도 부패의 예방에 기여를 한다.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매뉴얼을 제시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감시기구로서의 성격(Watchdog Agency)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sup>147)</sup>

## 3. 싱가포르 공무원대학(Civil Service College, CSC)

싱가포르의 공무원 대학<sup>148)</sup>은 최고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공무원대학은 1971년 3월 공무원훈련소(Staff Training Institute)로 시작하였다. 1975년 6월 공무원인적개발원(Civil Service Staff Development Institute)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 후 1971년, 1993년, 1996년 변화를 거쳐, 공무원 대학은 2001년 10월 총리실의 공공서비스국(Public Service Division)하에 법정 위원회로 설립되었다.<sup>149)</sup>

공무원 대학은 교육, 훈련, 연구, 직원개발을 위한 공공부문의 핵심적 연구소로서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전문지식의 교육 및 공유, 의견의 교환, 열린 공직문화와 공유된 시각의 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무원대학은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기구로 공공행정과 거버넌스, 리더십 등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sup>150)</sup>

## 4. 싱가포르 검찰조직

싱가포르의 검찰조직도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한 기구이다. 검찰조직의 수장은 검찰총장(Attorney-General)이다.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

---

147) King hea Joseph(fn 27), P. 66.

148) <https://www.cscollege.gov.sg/Pages/Default.aspx>.

149) 진종순, 싱가포르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싱가포르의 행정과 공공정책』, 신조사, 2010, 191면.

150) <https://www.cscollege.gov.sg/About%20Us/Pages/Default.aspx>.

장검사(Solicitor-General)제도를 두고 있다. 차장검사에는 차장검사와 제2차장검사(Second Solicitor-General)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소를 하는 부검사(Deputy Public Prosecutor)가 있다. 업무상으로 검찰총장 하부에 민사국, 형사국, 국제국, 법 개혁 및 개정국, 입법국 등의 각 국과 이들을 지원하는 총무국, 컴퓨터 정보시스템과, 도서관 및 자원센터, 내부감찰계 등이 조직되어 있다.<sup>151)</sup>

헌법 제35조에서 검찰총장의 임명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기소와 소송절차를 지휘·감독한다. 수사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다. 헌법상 직무로서 대통령, 총리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정부에 조언을 한다.<sup>152)</sup>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부검사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기소권한을 수행한다.<sup>153)</sup>

---

151) 박홍우(주 69), 361-363면.

152) 싱가포르 헌법 제35조 제7항.

153) 박홍우(주 69), 361-363면.

## 제 3 장 부파행위에 대한 처벌 및 대책

### 제 1 절 부파에 대한 제재

#### I. 부파에 대한 형사적 제재

싱가포르는 부파에 대한 엄정한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부파방지법에서 정하는 부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만불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벌금과 징역의 병과 등으로 처벌한다. 누구든지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자는 부파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가 부과된다.<sup>154)</sup>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뇌물을 수령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스스로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범법행위를 한 것이며, 동일한 범위의 형사제재가 부과된다.<sup>155)</sup>

부파행위가 계약이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파행위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10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의 병과되며, 수령한 뇌물에 상응하는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sup>156)</sup>

부파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운영된다. 판결을 하는 기구로서 법원과 기소를 하는 기구로서 법무장관실 그리고 조사기구로서 부파행위조사국과 다른 집행기관이 있다. 모든 부파와 관련된 사건은 조사가 완료되면 부파혐의자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기 전에 검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sup>157)</sup> 그 후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무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

---

154) 부파방지법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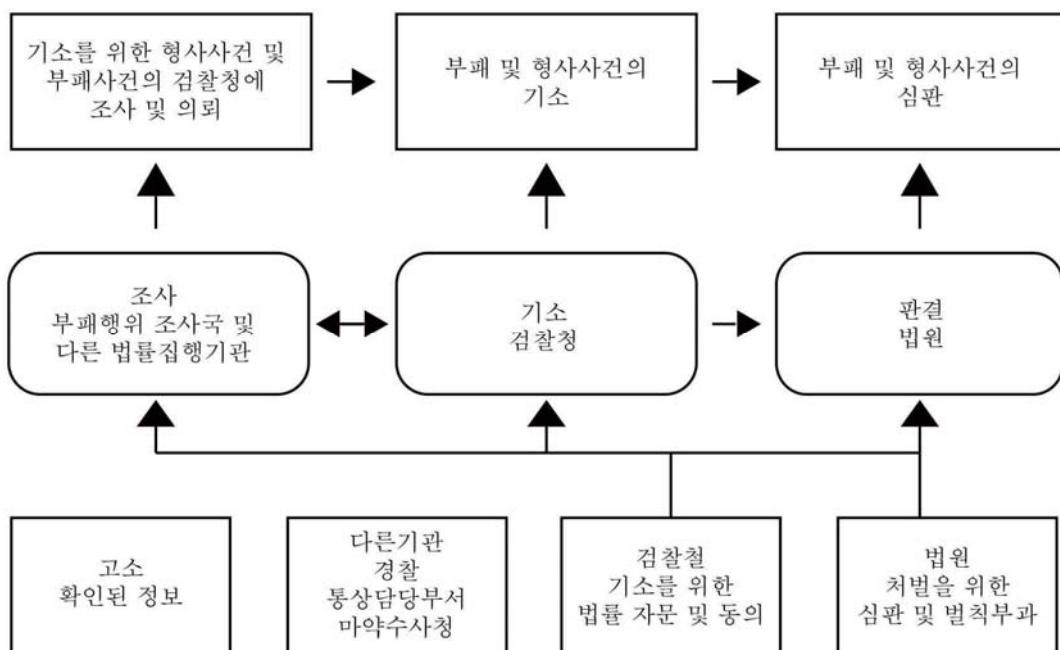
155) 부파방지법 제5조.

156) 부파방지법 제7조.

157) 부파방지법 제33조.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많은 다양한 정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부기관도 역시 그들이 우연히 알게 되거나 지득한 부패사례를 부패행위조사국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부패행위조사국은 정부기관 외에도 직무수행을 위하여 역시 다른 다양한 사적 조직과도 협력한다.<sup>158)</sup>

### 부패행위 관련 형사사법 체계도



[출처] <http://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we-work-closely>

158) <https://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s-we-work-closely>.

## II. 행정적 제재 및 기타 제재

### 1. 행정적 제재

부파행위 위반을 한 공무원이 형사적 제재를 받을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법원에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부서별 징계 규정(departmental disciplinary procedures)에 의하여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부서별 징계규정은 해임(dismissal from service), 강등(reduction in rank), 봉급인상의 정지(stoppage or deferment of salary increment), 과료 또는 견책(fine or reprimand)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약 공무원이 부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들의 직을 잃게 되거나 연금 대상자인 경우 연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잃게 된다.<sup>159)</sup>

### 2. 행정적 조치

공무원의 부파나 비리를 줄이기 위하여 몇 가지 행정적 조치가 취해진다. 파견경찰공무원을 상임의 민간 조사관으로 대체하거나, 부파행위를 조장하는 기회의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 밖에 행정절차의 간소화, 요식행위의 삭감, 공무원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할 봉급의 검토,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매수하는 행위는 계약의 종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 정부공무원에게 환기시키는 것 등의 행정적 조치가 취해진다.<sup>160)</sup> 행정적 대책은 직무의 분리, 직원의 순환 근무, 내·외부의 회계감사 및 감시 등을 포함한다.<sup>161)</sup>

---

159) <https://www.cpib.gov.sg/education/strategic-considerations/strong-anti-corruption-law-and-ministrative-measure>.

160) <https://www.cpib.gov.sg/education/strategic-considerations/strong-anti-corruption-law-and-ministrative-measure>.

161) Presentation by Lim Soo Ping, 2009 APEC Anti-Corruption & Transparency Experts'

싱가포르의 부페문제에 대한 접근은 행정에서의 효율성의 하나로 시작한다. 시스템을 파괴하고 속이거나 인식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허점이 많은 비효율적 행정에서 부패는 보다 가능성이 많으며, 그러한 비효율적 행정에 만연할 수 있는 부패를 위한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이론이다. 효율적 행정은 효율성에 정통한 사람 즉, 불만을 토로하는 것보다는 만족하는, 계획을 방해하는 것보다는 실천적인, 게으른 것보다는 혼신적인, 부패보다는 부패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가능하다. 즉, 정부기구가 행사하는 권한이 잘 관리되고 부패에 대한 동기나 기회가 감소한다면 부패의 위험은 그 만큼 작아지기 된다.<sup>162)</sup>

### 3. 장관행동강령위반에 대한 제재

모든 장관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항상 최상의 기준에 따라 행동장관 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누구라도 공무수행과정에서 장관행동 강령위반의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임될 수 있다.

## 제 2 절 부페방지대책

### I. 헌법 기능적 방지수단

헌법은 부폐를 감소시키거나 근절할 수 있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규정은 기본적인 목표와 국가정책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권리분립의 원칙<sup>163)</sup> 등이 그것이다.

---

Task Force Workshop on “Governance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Its Impact on Anti-Corruption” held in Singapore on 24th-25th February 2009.

162) Presentation by Lim Soo Ping, 2009 APEC Anti-Corruption & Transparency Experts' Task Force Workshop on “Governance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Its Impact on Anti-Corruption” held in Singapore on 24th-25th February 2009.

163) Zephyr Teachout, The anti-corruption principle, Cornell Law Review January, 2009, p. 342; Osita Nnamani Ogbu(fn 22), p. 104.

싱가포르의 법과 정부조직은 영국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영국의 입헌주의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의회우위, 법의 지배, 보통법 원리 등 영국의 법적 시스템을 싱가포르 헌법에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sup>164)</sup> 싱가포르는 의회주의적 정부의 웨스트민스트 모델의 본질적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친숙한 3권 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성된다.<sup>165)</sup> 행정권은 대통령, 총리, 내각으로 구성되며, 총리는 국가의 통치권자와 정당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은 국가의 형식적인 원수이며, 영국의 군주와 같은 명목상의 지위를 가진다.<sup>166)</sup>

싱가포르의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은 헌법현실에서는 특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당과 정부, 관료와 행정의 융합현상, 관료의 정치화 현상 등과 함께 행정국가화 현상이 뚜렷한 특징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관료는 정치의 등용문으로 기능한다.<sup>167)</sup>

이러한 독특한 헌법현실 하에서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정치엘리트의 발굴이나 정치적 엘리트의 교육 및 훈련의 장으로서 관료기구가 활용되고, 정치적 리더쉽의 연속성이라는 국가운영시스템으로서 부패방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II. 그 밖에 예방적 부패방지수단

### 1. 업무수행 방식의 검토(Review of Work Methods)

싱가포르에서는 업무수행 방식의 검토를 통하여 부패를 예방한다. 담당 공직자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직자간에 뇌물이 수수되는

164) Li-ann Thio(*fn 6*), p. 14.

165) Li-ann Thio(*fn 6*), p. 15.

166) Elizabeth C. Surin, Government influence on labor unions in a newly industrialized economy: A look at the Singapore labor system, *Comparative Labor Law Journal* Fall 1996, p. 105.

167) 전재국(주 15), 68면.

것과 같은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나 면허의 승인절차에 있어서 지연을 피하고, 복잡한 업무수행방식과 절차의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sup>168)</sup>

## 2. 공직자의 부채 없음의 선언(Declaration of Non-Indebtedness)

싱가포르는 공직자의 재산이나 부채관리를 통한 부패의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부채가 많은 공무원은 쉽게 의무나 공적을 저버리기 쉽고 부패에 굴복하기 쉽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은 해마다 그가 재정 곤란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공표할 필요가 있으며, 무담보채무가 봉급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sup>169)</sup>

## 3. 자산 및 투자 등의 선언(Declaration of Assets and Investments)

공무원은 그가 임명된 해부터 매년 그와 그의 배우자, 부양자녀의 재산, 투자 관련사항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수입으로 유지할 수 없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것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sup>170)</sup>

## 4. 선물의 금지(Non-Acceptance of Gifts)

공무원은 그들 자신과 직무관련성 있는(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현물이나 금전 등을 수령해서는 안되며, 공직자는 어떠한 향응을 제공받아서도 안된다.<sup>171)</sup>

---

168) <http://www.cpib.gov.sg/education/preventive-measures>.

169) <http://www.cpib.gov.sg/education/preventive-measures>.

170) <http://www.cpib.gov.sg/education/preventive-measures>.

171) <http://www.cpib.gov.sg/education/preventive-measures>.

## 5.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의 의지와 반부패환경의 조성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를 위한 성공적 요인으로 가장 주요한 특징을 듣다면 정치적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를 들 수 있다. 리콴유 전 총리의 부드러운 권위주의는 잠재적인 분열적 반대를 제거하고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경제적 기회와 맞바꾸면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모델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기 없는 경제적 정책들을 자연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반대도 제거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능력에 의해 담보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평등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 이상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고, 정치적 자유는 보다 중요한 상업적 기회를 위해서 양보되어야 한다<sup>172)</sup>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싱가포르는 공무원과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와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고위공직자와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가 좋은 그룹에 해당한다. 이것은 싱가포르가 어렵게 이룩한 번영과 성공의 초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배타주의적 특권(particularistic privileges)이라고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비금전적 특성을 갖는 부패방지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러한 특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시험대는 계속되고 있다.<sup>173)</sup>

## 6. 집중적 부패방지특별기구의 활동

부패방지조사국은 비공개적으로 활동하며, 1970년 이후로는 총리실의 감독 하에 활동한다. 부패행위조사국은 누구든지 부패방지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그들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으며, 그의 집이나 사무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unannounced)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다. 부패방지법의

---

172) Rafael X. Zahralddin-Aravena(*fn 4*), p. 743.

173) Eugene Kheng-Boon Tan(*fn 97*), p. 111.

제정 이후로 동 법 하에서 부패행위조사국의 집행은 그들의 직위나 지위에 관계없이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었다.<sup>174)</sup>

### 7. 예방강연(Prevention Talk)

부패방지의 노력의 하나로 부패행위조사국은 정부부서나 법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예방강연을 실시한다. 강연은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새로 선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강연은 부패방지법, 부페통제의 전략적 중요성, 공무원과 기업의 구성원들이 다루게 되는 해야 될 사항과 해서는 안되는 사항, 과거의 부패사례에 대한 사례연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해진다. 매 강연은 대략 한 시간 정도 행해지며, 부패방지법에 대한 강연, 질문과 대답, 비디오 강연 등으로 구성된다.<sup>175)</sup>

법집행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뇌물 또는 부패에 유혹에 노출되어 그러한 행위에 빠지기 쉬운 공무원들에게는 부패의 위험성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강연이 행해진다.<sup>176)</sup>

## III. 공의정보 제공자의 신분보호

### 1. 정보제공자 신분보호 원칙

부패방지법은 부패예방 대책의 하나로 부패행위 등의 제보나 공의정보를 제공한 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공의제보의 기준이나 보호가능 한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는 달리 제보가 금지되는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하면서,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

174) Sara G. Zwart(fn 51), p. 362.

175) <http://www.cpib.gov.sg/eservices/booking-prevention-talks>.

176) <http://www.cpib.gov.sg/eservices/booking-prevention-talks>.

## 2. 부패방지법 규정

부패방지법 제36조<sup>177)</sup>에 의하면 부패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complaint)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그 어떠한 소송에서도 증인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부패행위의 목격자나 증인도 정보제공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밝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것을 진술할 의무도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자를 밝힐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할 수 없으며, 진술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sup>178)</sup>

법원은 민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또는 그 밖에 어떠한 소송절차에서도 정보제공자의 이름이나 묘사 또는 그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는 서적·기록·문서 등이 있는 경우 조사절차나 증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보제공자와 관련된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필요하다면 정보제공자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sup>179)</sup>

## 3. 허위정보 제공자나 고소인의 경우

부패방지법은 고소를 한 정보제공자를 보호하지만, 만약 법원이 그가 의도적으로 허위 내지는 악의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의심하게

177) 부패방지법 제36조 정보제공자의 보호 (1)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complaint)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그 어떠한 소송에서도 증인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목격자나 증인도 정보제공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밝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다. 그리고 그를 밝힐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진술도 허용되지 않으며, 진술할 의무가 없다. (2) 민사, 형사 또는 그 밖에 소송절차에서 조사나 증거절차에 있어서 정보제공자의 이름이나 묘사 또는 그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 서적, 기록, 문서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그러한 대목을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필요하다면 삭제해야 한다.

178) 부패방지법 제36조 제1항.

179)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 제 3 장 부폐행위에 대한 처벌 및 대책

되면 그러한 보호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허위 내지는 악의적인 고소인은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기소를 면하지 못한다.<sup>180)</sup>

---

180) <https://www.cpib.gov.sg/cases-interest/cases-giving-false-information-cpib>.

## 제 4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I.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

본 연구는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부패방지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8개 국가의 부패방지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의 부패방지체계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와 다른 개별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분석은 부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부록참조>.

특히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부패관련 법령과 법령에 근거한 부패방지 기구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부패방지관련 정책의 입안에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침으로서의 그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 II. 법체계 및 주요 법령

싱가포르의 부패방지 법체계는 부패방지법을 포함한 부패관련법, 형법, 장관행동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있다.

부패통제와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로는 부패방지법이 있다. 그 밖에 부정축재법이 있었으나, 부패이익몰수법으로 대체되었다. 형법상 부패관련 규정은 형법 제161조에서 165조에서 공무원 수뢰에 관한 규정이다.

그 밖에 장관의 처신 및 신변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장관 행동강령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단체, 모든 기관들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두고 있다.

### III. 공직자의 범위와 금지행위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에 국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의 민간인도 포함한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으로 공무원의 범위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공무원, 의원, 공공단체 구성원 등은 당연히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 밖에 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Agent)으로는 신탁관리자, 행정관리, 집행관, 그리고 정부, 기업이나 법인 또는 공공단체, 수탁기관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또는 수탁기관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부패방지법은 뇌물이나 향응의 제공, 요구, 수수, 약속 등을 금지한다. 금지되는 뇌물이나 향응은 금전을 포함하여 대부, 사례, 보수, 커미션, 고용, 계약, 채무면제, 채무부담, 서비스 등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이나 재산적 가치를 포함한다. 금품이나 향응 등은 그 상한이나 하한이 없이 일체 금지된다. 모든 기관과의 부정거래도 금지된다. 의원이나 공공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부패방지법이나 부패관련 법률에서는 공무원의 외부강연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의 유급 파트타임 업무나 영리적 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과 “공식적 거래관계가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떠한 행사에서라도 선물이나 증정품을 말지 말 것”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 강연 등에 참여하여 사례 등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싱가포르는 공무원의 재직 중의 부패방지와 퇴직 후 공무원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재직 중 최상의 대우를 하고 있으며, 퇴직 후에는 연금

등의 보장을 통하여 공무원의 생활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퇴직 후 취업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싱가포르는 경제적 투자를 위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취급되고 있으며, 로비관련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 IV. 신고자 보호 규정

싱가포르는 공익제보의 기준이나 보호가능 한 정보에 대하여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보가 금지되는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관련 행위를 제보한 정보제공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36조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그 어떠한 소송에서도 증인으로 허락하지 않으며, 부패행위의 목격자나 증인도 정보제공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밝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자를 밝힐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할 수 없으며, 진술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조사절차나 증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보제공자와 관련된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필요하다면 정보제공자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V. 부패에 대한 제재

싱가포르는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상 필벌이 엄격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형사적 제재, 행정적 제재, 행정적 대책 등으로 구분된다.

### 1. 형사적 제재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가 부과되면, 부패행위가 계약이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 2. 행정적 제재

부패행위 위반의 경우 형사적 제재를 받을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되지만, 법원에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부서별 징계규정에 의하여 행정적 제재가 부과된다. 부서별 징계규정은 해임, 강등, 봉급인상의 정지, 과료 또는 견책 등을 포함한다.

### 3. 행정적 대책

싱가포르는 공무원의 부패나 비리의 기회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파견경찰공무원을 상임의 민간 조사관으로 대체하거나, 부패행위를 조장하는 기회의 제거, 행정 절차의 간소화, 요식행위의 삭감, 공무원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할 봉급의 적극적 검토 등과 같은 행정적 조치 등이 그것이며, 그 밖에 행정적 대책으로 직무의 분리, 직원의 순환근무, 내·외부의 회계감사 및 감시 등의 대책을 채택하고 있다.

## VII. 부패방지기구 및 권한

1. 싱가포르 정부의 부패방지기구로는 부패행위조사국, 공공서비스 위원회, 재무부 예산국, 싱가포르 공무원대학, 검찰조직 등이 있으나,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한 전담기구는 부패행위조사국이다.

2. 부패행위조사국은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전에는 경찰의 한 부서인 반부패 브런치에서 부패행위를 관할하고 있었다.

3. 부패행위조사국은 운영부, 법인사무부, 조사부 등 세 개의 주요 국으로 구분되며,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 압수·수색권한, 부패행위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부패행위조사국은 기소권한은 갖지 않으며,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청에 송부해서 검찰청에서 기소를 한다.

## 제 2 절 시사점

### I. 본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가치

본 연구는 부패원인과 대책에 관한 학문적 연구결과물로서 싱가포르 부패방지제도의 운영 및 성공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일반적인 부패의 현상과 원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의 부패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학문적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영역에서의 부패의 원인과 현상 및 대책에 관한 연구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구체적 상황에서의 부패원인 및 대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예방적 부패방지활동에 관한 정책적 연구 결과물은 한국社会의 효율적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체계에 관한 방향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부패예방교육 제도 및 정책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 II. 싱가포르 부패예방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싱가포르는 부패예방에 있어서 법체계나 부패방지기구의 역할 등은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

과는 차별화 된 정책으로 부패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1. 강력한 리더쉽과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데올로기

싱가포르는 부패척결을 위한 정치적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쉽과 이를 뒷받침 하는 이념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깨끗한 정부를 탄생시킨 대표적 국가이다.

#### 2. 부패방지기구의 광범한 권한

싱가포르는 부패방지법에서 부패행위조사국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부패행위 조사권, 압수수색의 권한, 체포권한 등을 부여하여 부패행위 조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 3. 엄정한 제재수단의 마련

싱가포르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형사적 제재, 행정적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해임과 해임으로 인한 연금 등의 경제적 기회박탈 등의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 4. 예방적 부패방지수단

싱가포르는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책 외에도 예방적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부패에 대한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처우를 민간기업 최고의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부패의 기회를 축소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김시윤, 발전국가의 탄력성과 지속성: 싱가포르의 사례,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4호, 2010

박홍우, 싱가포르의 사법제도, 법조 제56권 제11호, 2007

유문무, 아시아 국가 반부패정책 비교 - 한국의 반부패전략 개선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11권 제3호, 2009

전제국, 싱가포르의 국가생존전략과 깨끗한 정치, 아세아연구 제38권  
제1호, 1995

진종순, 싱가포르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싱가포르의 행정과 공공정책,  
신조사, 2010

### 외국문헌

Adefolake Adeyeye, Foreign bribery gaps and salant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implementation, Business Law International  
2014. 9

Cameron Sim, The Singapore chill: Political defamation and the  
normalization of a statist rule of law,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2011. 3

Claes Sandgren, Combating corruption: The misunderstood role of law,  
International Lawyer Fall, 2005

## 참 고 문 헌

C. Raj Kumar, Corruption,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Challenges for promoting access to justice in Asia, Michigan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8

Elizabeth C. Surin, Government influence on labor unions in a newly industrialized economy: A look at the Singapore labor system, Comparative Labor Law Journal Fall 1996

Herbert Smith, “Guide to Anti-Corruption in Asia”(2012/13)

Mark Tushnet, Authoritarian constitutionalism, Cornell Law Review January, 2015

Eugene Kheng-Boon Tan, Law and values in Governance: The Singapore Way, Hong Kong Law Journal 2000

George Baylon Radics, Singapore: A fine city: British colonial criminal sentencing policies and its lasting effects on the Singaporean Corporal State, Santa Clar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4

Jeremy Pope, Ti Source Book 2000: Confronting corruption: The elements of a national integrity system 13(2000)

Joanna MacMillan, Reformasi and public corruption: Why Indonesia’s anti-corruption agency strategy should be reformed to effectively combat public corruption,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2011

Jon S.T. Quah, Globalization and Corruption Control in Asian Countries: The Case for Divergence, 4 Pub. Mgmt. Rev. 453 (2002)

Li-ann Thio, LEX REX OR REX LEX? COMPETING CONCEPTIONS OF THE RULE OF LAW IN SINGAPORE, UCLA Pacific Basin Law Journal Fall 2002

Lim Soo Ping, Presentation: 2009 APEC Anti-Corruption & Transparency Experts' Task Force Workshop on "Governance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Its Impact on Anti-Corruption" held in Singapore on 24th-25th February 2009

Lee Kuan Yu, Extrapolating from the Singapore Experiences, (Singapore: Ministry of Culture)

King hea Joseph, "A comparative study of the anti-corruption measures of Hong Kong and Singapore since 1945", Th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HKU Scholars Hub), <http://hdl.handle.net/10722/25883>

Philip M. Nichols/George J. Siedel/Mattew Kasdin, Corruption as a pan-cultural phenomenon: An empirical study in countries at opposite ends of the former Soviet Empire,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Winter 2004

Osita Nnamani Ogbu, Combating corruption in Nigeria: A critical appraisal of the laws, institutions, and the political will,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Spring, 2008

Philip M. Nichols, The psychic cost of violating corruption laws, Vanderbilt Journal Transnational Law, 2012. 1

Rafael X. Zahralddin-Aravena, Chile and Singapore: The individual and the collective, A comparison,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Spring 1998

Sara G. Zwart, A favorable climate for foreign investment in Singapore: Recent changes in the companies act hold directors of strict standards of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Lawyer Spring, 1987

## 참 고 문 헌

Zephyr Teachout, The anti-corruption principle, Cornell Law Review  
January, 2009

森下 忠, 諸外国の汚職防止法制, 国際刑法研究 第14巻, 成文堂, 2013  
在シンガポール日本国大使館, シンガポールの司法制度の概要, -特に  
刑事訴訟法を中心として-, 2010

## 참조판례

Chan Wing Seng v pp(1997)SGHC 97

PP v Khoo Yong Hak(1995)2 SLR 283

Public Prosecutor v. Ng Boon Gay(2013) SGDC 132

## 웹문서

[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law\\_of\\_Singapore.](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law_of_Singapore)

<http://www.cpib.gov.sg>

[http://www.cpib.gov.sg/about-us/cpib-flag-and-logo.](http://www.cpib.gov.sg/about-us/cpib-flag-and-logo)

[http://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structure.](http://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structure)

[http://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we-work-closely.](http://www.cpib.gov.sg/about-us/organisation-we-work-closely)

[http://www.cpib.gov.sg/about-us/our-history.](http://www.cpib.gov.sg/about-us/our-history)

[http://www.cpib.gov.sg/careers/corrupt-practices-investigation-assistant-cpia.](http://www.cpib.gov.sg/careers/corrupt-practices-investigation-assistant-cpia)

[http://www.cpib.gov.sg/careers/corrupt-practices-investigation-officer-cpio.](http://www.cpib.gov.sg/careers/corrupt-practices-investigation-officer-cpio)

[http://www.cpib.gov.sg/careers/management-executive.](http://www.cpib.gov.sg/careers/management-executive)

[https://www.cpib.gov.sg/cases-interest/cases-giving-false-information-cpib.](https://www.cpib.gov.sg/cases-interest/cases-giving-false-information-cpib)

[http://www.cpib.gov.sg/education/preventive-measures.](http://www.cpib.gov.sg/education/preventive-measures)

[https://www.cpib.gov.sg/education/strategic-considerations/strong-anti-corruption-law/administrative-measure.](https://www.cpib.gov.sg/education/strategic-considerations/strong-anti-corruption-law/administrative-measure)

[http://www.cpib.gov.sg/education/what-corruption.](http://www.cpib.gov.sg/education/what-corruption)

[http://www.cpib.gov.sg/eservices/booking-prevention-talks.](http://www.cpib.gov.sg/eservices/booking-prevention-talks)

[https://www.cpib.gov.sg/eservices/reportingproviding-information-corruption-offences/how-cpib-deals-corruption-complaints.](https://www.cpib.gov.sg/eservices/reportingproviding-information-corruption-offences/how-cpib-deals-corruption-complaints)

[https://www.cpib.gov.sg/legislation/introduction.](https://www.cpib.gov.sg/legislation/introduction)

[https://www.cscollege.gov.sg/Pages/Default.aspx.](https://www.cscollege.gov.sg/Pages/Default.aspx)

[https://www.cscollege.gov.sg/About%20Us/Pages/Default.aspx.](https://www.cscollege.gov.sg/About%20Us/Pages/Default.aspx)

[http://www.north.ad.jp/ssn/ssnjrnlessay/jinno\\_singcaning.html,](http://www.north.ad.jp/ssn/ssnjrnlessay/jinno_singcaning.html)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13733/getting-the-deal-through-anti-corruption-regulation-in-singapore-2014.](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13733/getting-the-deal-through-anti-corruption-regulation-in-singapore-2014)

[http://www.usaid.gov/our\\_work/democracy\\_and\\_governance/publications/pdfs/ACA\\_508c.pdf.](http://www.usaid.gov/our_work/democracy_and_governance/publications/pdfs/ACA_508c.pdf)

[http://www.transparency.org/cpi2014/results.](http://www.transparency.org/cpi2014/results)

# 부 록

##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                              | 캐나다  | 미국  | 오스트리아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싱가포르                                | 일본                                |
|------------------------------|--|---|----------------------------------|-------------------------------|--|-----------------------------------|-------------------------------------|-----------------------------------|
| 법체계<br>(행정법,<br>형법, 강령<br>등) | - 행정법<br>- 형법<br>- 강령                              | - 연방형법<br>- 개별 부패<br>방지법<br>- 공무원<br>윤리강령 | - 행정법<br>- 형법<br>- 행동강령          | - 행동강령<br>- 형법<br>- 행정법       | - (형식적)<br>부폐방지법<br>- 행정규칙,<br>가이드라인],<br>지침 등 | - 행정법<br>- 형법<br>- 강령(장관,<br>공무원) | - 부폐방지법<br>- 형법<br>- 강령(장관,<br>공무원) | - 행정법<br>- 형법<br>- 훈령 등<br>규칙     |
| 주요 법령                        | - 이해충돌법<br>- 공직신고자<br>보호법<br>- 로비법<br>- 공공부문<br>강령 | - 연방형법<br>(뇌물죄,<br>이해충돌<br>방지규정)          | - 연방공무원<br>법<br>- 형법<br>- 단체 책임법 | - 장관행동<br>강령 및<br>공무원<br>행동강령 | - 연방법<br>- 주법<br>- 행정규칙                        | - 부폐방지법<br>- 공직생활<br>투명성법         | - 부폐방지법<br>- 국가공무원<br>법             | - 국가공직자<br>윤리법<br>- 국가공직자<br>윤리규정 |

|             | 캐나다   | 미국  | 오스트리아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싱가포르   | 일본  |
|-------------|---|---|--|--|--------------------------------------|-----------------------------------|--|---|
| 공직자         | - 연방의원<br>- 공무원<br>(일반공무원,<br>보고대상<br>공무원)<br>- 공직자 | - 공무원 및<br>고용인<br>- 하원의원<br>- 공무원으로<br>선출, 지명<br>되거나 천거<br>된 사실이<br>통보된 자 | - 공직자<br>(형법)<br>- 공무원<br>(연방공무<br>원법) | - 정무직<br>공직자<br>- 직업공무원<br>- 공공기관<br>중사자 | - 공직자<br>담당자<br>- 공직<br>고용자<br>- 교육생 | - 공직자<br>(국내, 국외,<br>법관)          | - 공무원<br>의원을 포함<br>한 모든<br>공직자 및<br>공공단체,<br>법인 등 포함 | - 일반적<br>공무원<br>(공무원법)  |
| 공직자 외<br>범위 |   |   |  |  |                                      | - 배우자<br>- 가족(친척)<br>- 자녀<br>- 가족 | - 배우자<br>- 가족(친척)<br>- 이해관계자<br>- 제3자                | - 이해관계인<br>- 제3자<br>- 제3자<br>(주식 기타<br>증권보유<br>신고/뇌물죄<br>적용)<br>- 직원대리인<br>등과소속기업 |

| 캐나다   | 미국   | 오스트리아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싱가포르  | 일본   |
|---|--|---------------------------|---|--|--|---|--|
| - 이 해 충돌<br>- 투표<br>- 내부 정보<br>이용<br>- 영 헌행사<br>외부 채용<br>- 금품 등<br>- 혜택 | - 이해 충돌<br>- 불법 사례<br>수수<br>- 의사 결정<br>- 우선적 처리<br>- 공무와 소득<br>- 내부 정보<br>이용 | - 집단파斗 램<br>금지<br>- 편파 행위 | - 부정청탁 및<br>금품 수수<br>- 부수적인<br>업무의 제한<br>- 선물 수수<br>- 내부 정보<br>이용 | - 대가 관계<br>- 영 헌행사<br>- 이익 충돌<br>- 주식, 증권<br>- 투자<br>- 직무 친념<br>의무 위배<br>- 내부 정보<br>이용 | - 공무 수행<br>및 포기에<br>대한 제의,<br>약속,<br>증여<br>- 선물 등<br>- 영 헌행사 | - 뇌물 및 헝운<br>제 공급지<br>포함) 간의<br>부정거래<br>- 의원 및 공공<br>단체 뇌물<br>- 조사 및<br>수색 방해<br>- 부과 행위<br>조사 구에<br>대한 정보<br>제공 의무<br>위반 | - 금전 및 물품<br>수수<br>- 금전 소비 대차,<br>부동산의 증여<br>- 무상 물품 대여<br>부동산 대출,<br>무상 서비스<br>제공<br>- 미공개 주식<br>양수<br>- 공용 점대<br>- 이해 관계자<br>동반 유기<br>또는 글프<br>- 협의 및 사실<br>호도 정보 제공 |
| - 협찬여행<br>- 민간 계약<br>- 정치 활동<br>- 모금 등                                  | - 영 헌행사<br>- 외부 채용<br>- 금품 등 혜택<br>- 여행                                      | - 민간 계약                   | - 정치 활동<br>- 공무 상비 및<br>누설  | - 민간 계약  | - 이해 관계자<br>동반 여행<br>- 사회 통념상<br>상당하지 않은<br>접대, 친선성의<br>의    |   |  |

|                         | 캐나다                                     | 미국   | 오스트리아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싱가포르  | 일본  |
|-------------------------|---|--|--|---|--|--|---|---|
| <b>금품 등<br/>(유형/가액)</b> | - 원칙적<br>금지<br>- 선물 기타<br>이익<br>- 200달러 | - 주별 차이<br><br>- 소액의<br>사소한 선물<br>- 100유로                    | - 원칙적 금지<br><br>- 장관 : 140<br>파운드 이하<br>- 하원 : 650<br>파운드<br>- 상원 : 500<br>파운드 | - 원칙적 금지<br><br>- 장관 : 25<br>유로                   | - 원칙적 금지<br><br>- 연방 : 25                                | - 원칙적 금지<br><br>- 원칙적 금지<br><br>- 원칙적 금지                 | - 원칙적 금지  | - 원칙적 금지  |
| <b>외부장의,<br/>장연</b>     | - 특별규정X                                 | - 원칙적 금지<br><br>- 제공된 공무<br>서비스와<br>직접적 연관<br>이 있는<br>경우에 적용 | - 부수적인<br>행위로 가능<br>(신고 및<br>허가 사항)<br><br>- 선출직 공직<br>자의 부수<br>적인 수입<br>공개    | - 공무원 행동<br>관리지침<br><br>- 기타의 경우<br>소속기관의<br>허가요함 | - 직위, 관행,<br>평균임금<br>고려<br><br>- 기타의 경우<br>소속기관의<br>허가요함 | - 교육기관<br>에서의 강연<br>(허가 없이<br>가능)<br><br>- 소속기관<br>장의 허가 | - 직무관련성<br>금지(선물 및<br>사례수금지)<br><br>- 소속기관<br>장의 허가 | - 이해관계자의<br>의뢰에 의한<br>장연 및 방송<br>출연 등에<br>대하여 윤리<br>감독관의<br>사전승인에<br>의하여 가능 |

| 캐나다   | 미국  | 오스트리아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싱가포르     | 일본       |
|---|---|--|---|---|----------|----------|----------|
| - 전체 전직<br>공무원(1년)<br>- 전직 보고<br>대상 공무원<br>(2년) | - 퇴직한 모든<br>공무원<br>- 직접 또는<br>상당히 관여<br>했던 사안 | - 퇴직 후<br>6개월 유예<br>- 직위 또는<br>직무관단에<br>상당한 영향을<br>받은 법인에<br>활동 금지<br>- 60세 미만<br>후직공직자에<br>대해서도<br>일정한 의무<br>부여 | - 공무원 행동<br>관리지침<br>- 공무원 영리<br>활동 및<br>직무관단에<br>상당한 영향을<br>받은 법인에<br>활동 금지<br>- 이익충돌<br>금지규정<br>- 공무원 행동<br>관리지침 | - 퇴직 후<br>취업 가능<br>- 경우에 따라<br>공직자윤리<br>위원회의<br>감독  | - 특별 규정X | - 특별 규정X | - 국가공무원법 |
| 퇴직 후<br>취업<br>(대상/기준)                           |   |  |   |   |          |          |          |
| - 로비법: 로비<br>스트 등록                              | - 로비법: 로비<br>스트 등록<br>등록, 로비<br>활동 공개         | - 로비법: 로비<br>스트 등록.<br>미이행 시<br>행정위반에<br>따른 벌금.<br>로비스트<br>보수에 대한<br>징시상 규제                                      | - 이익충돌<br>금지규정<br>- 공무원 행동<br>관리지침  | - 특별 규정X<br>- 주의회 규칙<br>으로 로비<br>스트 등록<br>2개주 시행<br>- Brandenburg<br>와Rheinland<br>-Pfalz | - 특별 규정X | - 특별 규정X | - 특별 규정X |
| 로비  |   |  |   |   |          |          |          |

| 캐나다                         | 미국   | 오스트리아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싱가포르   | 일본   |
|-----------------------------|--|--|--|---|---|--|--|
| - 공직자 신고<br>보호법             | - 내부고발자<br>보호법:내부<br>고발 접수<br>및 처리<br><br>신고자<br>보호<br>(대상,<br>방식) | - 웹상에서<br>익명의<br>공익신고서<br>스템 구축<br><br>내부고발자<br>보복금지<br>및 징계 | - 공익정보<br>공개법<br>(1998)<br><br>- 근로자<br>노동재판소의<br>재판을<br>통한 보호 | - 공익신고자<br>보호센터<br>(함부르크)<br><br>- 공익신고<br>보호관<br>(베를린) | - 공직 생활<br>투명성법<br><br>- 일체의 소송<br>절차에서<br>증인, 참고인<br>등으로 하기<br>되지 않음<br><br>- 일체의 소송<br>절차 진술<br>의무 없음<br><br>- 법원은 정보<br>제공자의<br>신원이 노출<br>되지 않도록<br>조치를 취할<br>의무가 있음 | - 공익통보자<br>보호법<br><br>- 신고대상:<br>개인의 생명·<br>신체보호·환경<br>보전·소비자<br>이익의옹호<br><br>- 신고방식:<br>특별히 정하고<br>있지 않음.<br>다만 원칙적<br>으로 익명으<br>로는 불가능 | - 일체의 소송<br>절차에서<br>증인, 참고인<br>등으로 하기<br>되지 않음<br><br>- 일체의 소송<br>절차 진술<br>의무 없음<br><br>- 법원은 정보<br>제공자의<br>신원이 노출<br>되지 않도록<br>조치를 취할<br>의무가 있음 |
| - 형벌:징역<br>벌금, 물수<br>- 내부징계 | - 형벌:징역,<br>벌금, 물수<br>- 민사처벌:<br>부당이득<br>반환                        | - 형벌<br>- 경계   | - 형벌:징역,<br>벌금, 물수<br>- 내부징계                                   | - 형벌<br>- 행정벌<br>- 내부징계<br>- 연금정지<br>(퇴직자)              | - 형벌<br>- 부과형 가눙<br>- 내부징계  | - 형사적 제재<br>- 행정적 제재<br>- 연금정지   | - 형벌<br>- 내부징계   |

|       | 캐나다   | 미국  | 오스트리아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싱가포르           | 일본                        |
|-------|---|---|---|---|--|--|----------------|---------------------------|
| 주요 조직 | -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br>- 로비위원회<br>- 재무위원회<br>- 왕립기마경찰대 | - FBI<br>- 정부윤리청<br>- 법무부<br>- 감찰국<br>- 특별심사청 | - 경찰<br>- 경제범죄 및 부패 행위의 소추를 위한 중앙검찰청<br>- 연방부파<br>- 행위 예방 및 방지 청<br>- 회계감사원 | - 공무원인<br>- 왕립검찰청<br>- 중대부정 수사청<br>- 국가회계 감사원<br>- 감사위<br>- 공공회계<br>- 감사위원회 | - 연방·내무부, 연방법죄청<br>- 주. 각 주의 상황에 맞는 조직<br>- 투명성고등사무국 | - 중앙부파<br>- 방지처<br>- 공직자윤리<br>- 위원회<br>- 사무국 | - 부패 행위 조사국    | - 국가·공직자 윤리심사회<br>- 윤리감독관 |
|       | - 조사<br>- 수사<br>- 기소요청                            | - 조사<br>- 수사<br>- 기소 또는 기소요청                  | - 무영장 정보 제공 요구권<br>- 비밀유지<br>- 의무 면제<br>- 진술거부권 제한                          | - 조사<br>- 검·경·회계<br>- 조직과의<br>연계를 통한<br>수사, 기소                              | - 정보수집<br>및 제공<br>- 감독<br>- 기소권한은<br>없음              | - 조사<br>- 수사<br>- 체포권                        | - 조사권<br>- 경계권 |                           |
|       | - 조사<br>- 수사<br>- 기소요청                            | - 조사<br>- 수사<br>- 기소 또는 기소요청                  | - 무영장 정보 제공 요구권<br>- 비밀유지<br>- 의무 면제<br>- 진술거부권 제한                          | - 조사<br>- 검·경·회계<br>- 조직과의<br>연계를 통한<br>수사, 기소                              | - 정보수집<br>및 제공<br>- 감독<br>- 기소권한은<br>없음              | - 조사<br>- 수사<br>- 체포권                        | - 조사권<br>- 경계권 |                           |
|       | - 조사<br>- 수사<br>- 기소요청                            | - 조사<br>- 수사<br>- 기소 또는 기소요청                  | - 무영장 정보 제공 요구권<br>- 비밀유지<br>- 의무 면제<br>- 진술거부권 제한                          | - 조사<br>- 검·경·회계<br>- 조직과의<br>연계를 통한<br>수사, 기소                              | - 정보수집<br>및 제공<br>- 감독<br>- 기소권한은<br>없음              | - 조사<br>- 수사<br>- 체포권                        | - 조사권<br>- 경계권 |                           |
|       | - 조사<br>- 수사<br>- 기소요청                            | - 조사<br>- 수사<br>- 기소 또는 기소요청                  | - 무영장 정보 제공 요구권<br>- 비밀유지<br>- 의무 면제<br>- 진술거부권 제한                          | - 조사<br>- 검·경·회계<br>- 조직과의<br>연계를 통한<br>수사, 기소                              | - 정보수집<br>및 제공<br>- 감독<br>- 기소권한은<br>없음              | - 조사<br>- 수사<br>- 체포권                        | - 조사권<br>- 경계권 |                           |
|       | - 조사<br>- 수사<br>- 기소요청                            | - 조사<br>- 수사<br>- 기소 또는 기소요청                  | - 무영장 정보 제공 요구권<br>- 비밀유지<br>- 의무 면제<br>- 진술거부권 제한                          | - 조사<br>- 검·경·회계<br>- 조직과의<br>연계를 통한<br>수사, 기소                              | - 정보수집<br>및 제공<br>- 감독<br>- 기소권한은<br>없음              | - 조사<br>- 수사<br>- 체포권                        | - 조사권<br>- 경계권 |                           |